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145-01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연구 담당

김 정 호 원	장	연구 총괄, 자료 분석, 외국사례, 정책 검토
강 정 일 이 사 장		관련정책 및 대안 분석
김 경 덕 연구 위원		농업총조사 통계분석
정 영 환 연구 위원		창업농 의견조사, 관련정책 검토
최 은 아 연구 위원		문헌정리, 자료 집계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연구기간: 2015.10.30~2015.12.29)의 최종보고서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당면한 농정 과제와 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농정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연구과제를 몇 차례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반면에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농업의 중추 세력인 40~50세 경영주가 공동화되어 농업경영구조가 취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 검토가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그리고 학계와 유관기관·단체의 전문가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청년 농산업창업을 위한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 12.

(사)환경농업연구원 이사장 강 정 일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내용 및 방법	7
4. 보고서 구성	9

제2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

1. 기존의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11
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20
참고자료: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사례	23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사례	27

제3장 최근의 귀농 동향과 영농승계 및 창업농 추세

1. 최근의 귀농인력 동향	29
2. 농업총조사에 의한 최근의 귀농 동향 분석	32
3. 최근의 영농승계자 및 창업농 추세	36

제4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41
2. 청년 농산업창업에 대한 의견	42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54
참고자료: 강원도 2015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계획	59

제5장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정책의 외국사례

1. 구미 국가의 귀농 동향과 정책	63
---------------------------	----

2. 일본의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정책 72
3. 외국사례의 시사점 77

제6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1. 농산업창업 지원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79
2. 기타 관련지원사업의 추진 92
3.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93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97
2. 결론 및 정책 건의 101

부록 1 : 청년 농산업창업에 관한 의견조사표 105

부록 2 :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제도 개요 110

참고문헌 126

표 목 차

제3장

표 3-1. 2000년대 귀농·귀촌자 추이	29
표 3-2. 2000년대 귀농·귀촌가구의 시도별 동향	30
표 3-3. 2000년대 귀농·귀촌자의 연령별 동향	31
표 3-4. 최근 귀농·귀촌자의 역귀농 동향	31
표 3-5. 2010년 경영주 영농경력별 영농형태 분포	33
표 3-6. 영농경력 5년 미만 신규진입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34
표 3-7. 2000년 이후 농가경영주 영농경력 변화 추이	35
표 3-8. 2000~2010년간 영농경력별 순영농승계농가 추정	37
표 3-9. 영농경력별 경영승계 및 은퇴 연령 분포: 2005~2010년	38
표 3-10. 취농교육 청년들의 창업시기 조사결과	40

제4장

표 4-1. 설문조사 대상자	42
표 4-2. 설문조사 일반사항	43
표 4-3. 농산업 창업의 이유	44
표 4-4. 창업 이유와 창업 시기	45
표 4-5. 창업 지역과 창업 작목	46
표 4-6. 창업자금 조달과 정착기간	48
표 4-7. 농산업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49
표 4-8.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지원자격 등	51
표 4-9.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지원조건 등	52
표 4-10.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항목	53
표 4-11.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분포	54

제6장

표 6-1. 농산업창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주체별 사업추진절차 84

표 6-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분담 91

표 6-3. 최근의 취농·창업교육 실시기관 현황 92

그림 목 차

제5장

그림 5-1. 일본의 농업취업자 소요 전망	73
-------------------------------	----

제6장

그림 6-1.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의 개념 비교	80
그림 6-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82
그림 6-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추진체계	87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농촌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반면에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 이미 2010년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영농후계인력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항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1995년 13%에서 2014년에 40%로 증가하였으나, 40세 미만의 경영주는 동기간 9.8%에서 0.9%로 감소하였다.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농업의 중추 세력인 40~50세 경영주 계층이 감소하여 농업경영구조가 크게 취약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힘입어 일부 지역의 농촌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 지방자치체가 성숙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인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인센티브)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최근 들어 육지로부터 연간 약 1만 명 정도가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버 귀농부터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입으로 제주도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 더욱이 2000년대 들어 나라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지역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을 더욱 전문화하고 과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경향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에 대비하여 젊고 창의적인 신규인력이 농업·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들어 영농 창업자 수가 연평균 1만명(가구) 수준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자 비중은 10% 내외로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 * 30대 이하 귀농자 수(비중) : (2001년) 354호(40%) → (2010년) 612(15) → (2014년) 1197(11)
 - 특히 영농창업 후 2~3년간은 생활에 애로를 겪다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귀농 3~4년차부터는 농업소득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점차 경영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자가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단계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 검토가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안)은 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최대 3년간 훈련수당 또는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원 대상자는 연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창업해야 하고, 창업 후에도 창업안정자금 지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의무를 가지며, 위반시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이 수행되었으나,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와 마상진의 연구(신규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5) 외에는 특이할만한 연구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 등은 이 연구에서 농업 후계인력의 동향과 전망,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신규 취농의 실태와 관련 요인, 일본의 신규 취농 실태와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고, 신규 취농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특히 신규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①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과 훈

련을 확충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②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취농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으며, ③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농후계자가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에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연구책임자: 마상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5년의 제1차년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자 1,209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1,000명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 귀농·귀촌 과정 특성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없이 귀농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더 적었으며, 전 직업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 순수 도시출신자, 행정·경영·관리자나 사무직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초기에는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귀농·귀촌 동기로 전원생활이나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것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연령대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많았다.
- 귀농·귀촌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여유 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농지 구입의 어려움,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 지적되었다. 귀농·귀촌자들은 성공적 정착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정부·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귀농·귀촌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 귀농·귀촌자들은 주로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농촌의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접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2) 경제활동 실태

- 귀농·귀촌자의 대부분(3/4)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경우(13.3%)나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농업 포함, 10.6%)은 많지 않았다. 농업종사자들은 향후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귀촌자의 대다수가 농업생산 이외에 농산물 판매(60.7%), 농산물 가공(40.8%), 농촌관광(10.8%) 등 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밖에 자영업, 농업 외 직장, 농외 시간제 노동, 농업 노동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본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 귀농·귀촌자의 가구소득은 1천만 원 미만이 19.7%, 1천만~2천만 원이 22.4%, 2천만~3천만 원이 18.6%, 3천만~5천만 원이 21.8%, 5천만 원 이상이 17.4%였는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젊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다.
- 귀농·귀촌 후의 소득 변화를 보면 감소한 경우(65%)가 증가한 경우(13.8%)보다 훨씬 많았는데,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진 응답자(19.1%)보다 증가한다고 보는 응답자(55.6%)가 훨씬 많았으며,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도시출신자보다 농촌출신자 등이 미래 소득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3) 지역사회활동 실태

-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조사한 결과에서 ‘갈등 없음’(38.4%)도 많았지만, ‘귀농·귀촌자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24.3%),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5.4%)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고학력자일

수록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모임 참여 문제’, ‘영농방식의 차이’ 등으로, 도시출신자는 농촌출신자보다 ‘재산권 침해’와 ‘선입견과 텃세’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귀농·귀촌자들의 70% 이상이 주민들과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적지 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 대다수 귀농·귀촌자(66.8%)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모임 종류별로 보면 농민단체, 공익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적은 반면, 마을회의나 행사, 농업인 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친목단체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다.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친목 도모’, ‘사회적 인맥 확대’, ‘사회 봉사’,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 등이 많았으며,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참여 관련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다.
- 귀농·귀촌자가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가능한 분야로는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봉사’(33.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멘토링·상담 및 학교·평생교육 분야’(32.2%),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분야’(25.7%), ‘상품 기획·마케팅’(25.1%), ‘기능·기술분야 실기지도’(23.7%), ‘문화·예술 분야’(17.0%), 고객서비스(11.1%), 체육 분야(8.7%), 보건·건강 분야(8.3%) 등으로 나타났다.

(4) 귀농·귀촌에 대한 자기 평가

-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45.5%)이라는 평가가 실패(5.1%)라는 평가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공적인 편이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귀촌인들의 분야별 성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의 만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등에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소득과 도시에서의 자신의 경험 활용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였다.
- 귀농·귀촌자 중 도시로 역이주(逆移住) 의향이 있는 사람(8.6%)은 매우 적었고, 대다수(72.1%)는 의향이 없었다. 역이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38.2%)가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시장, 병원, 문화센터 등)’(26.5%), ‘주택 문제(노후, 규모, 시설) 때문’(8.8%) 등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가. 연구내용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위상
 - 후계농업인 지원, 귀농창업 지원, 6차산업 창업지원 등과의 차별성
 -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격 규정
- 최근의 귀농 동향과 영농승계 및 창업농 추정
 - 통계적인 정책수요 추정 : 농업총조사(2000년, 2005년, 2010년) 신규진입농업인 추이 분석
 - 신규 농산업창업 희망자 추정 : 창업농 교육기관의 창업수요 조사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 농산업창업 의향과 영농계획
 - 농산업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등 준비 사항
 - 농산업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외국사례
 - 외국의 귀농 지원정책 사례 :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 일본의 창업농 지원정책과 운영 실태
 - 외국 사례의 시사점과 참고사항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범위, 선정 방법 등
 - 훈련수당 지원 : 영농창업 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등

- 창업안정자금 지원 :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금 반환 등
- 기타 사항 : 지자체사업 사례, 건의사항
-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검토
- 창업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제고방안

3.2.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기존의 후계농 육성 관련정책에 대한 검토
- 창업농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귀농과 영농승계의 추이 분석 및 창업농 대상자 추정

- 농업총조사 원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통한 통계적 추정
- 창업농 교육기관의 창업수요 조사에 의한 추정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 조사 대상 : 농과계 대학생, 청년 창업농 교육이수자, 창업농 희망 도시민, 귀농창업자 등
- 조사 내용 : 일반 사항, 창업농 의향과 준비 실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등

○ 외국사례 수집 및 검토(문헌조사)

- 외국 귀농 지원정책 사례 :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 일본의 영농창업 관련제도와 지원정책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영농창업인과 관련된 정책담당자, 통계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

4.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보고서는 본론을 총 6개 장으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한다.
- 제2장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다.
 - 제1절에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과 유사한 기존의 정책사업, 예를 들어 후계농업인 지원이나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과 비교하고, 제2절에서 금번 2016년부터 신규로 실시예정인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정책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3장에서는 최근의 귀농과 영농승계 추이를 분석하고 청년 농산업창업 대상을 추정한다. 이 작업은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통계적인 방법과 정책 계획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부터 연간 300명 정도의 창업농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에서 청년 농업인력의 통계 추이를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201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정책대상을 추정하며, 제3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신규 창업농 의향을 전망한다.
- 제4장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하여 농과계 대학생, 청년 창업농 교육이수자, 창업농 희망 도시민, 귀농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1절에서 의견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고, 제2절에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다. 주요 내용은 농산업창업 의향과 영농계획, 농산업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등 준비 사항, 농산업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한다.

- 제5장에서는 귀농 동향 및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정책의 외국사례에 대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자료를 정리한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행되고 있는 창업농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연구자료(별책)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제1절에서는 주요 외국의 사례로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귀농 동향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일본의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제도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제3절에서는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 제6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야 할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 제1절에서 농산업창업 지원의 내용과 추진 방안, 제2절에서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제3절에서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 제7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 제1절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제2절에서 결론 및 정책 건의로서 창업농 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

1. 기존의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1.1.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 이 사업은 본래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3년 동안 실시되었던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사업에서 비롯되었는데, 1981년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으로 재발족하게 되었다.
- 1970년대를 전후한 우리나라 경제의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고도성장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출, 특히 청장년의 대량 이농을 보게 되어 앞날 농어업을 이어 나갈 후계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 이에 정부는 미래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담당해 나갈 중심적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청소년회원’을 중심으로 ①과학영농을 위한 과제 지원, ②영농정착 지원, ③시범영농 지원 등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1978년부터 육성사업에 착수하였다.
- 당시에 자금 지원은 단기자금과 중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는데, 단기자금은 1년 상환, 연리 15%, 중기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되 연도에 따라 12~18.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상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2~3일간의 교육훈련을 받으며, 사업실시 중에는 수시로 영농지도와 사업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 영농후계자육성사업을 직접 담당한 기관은 농수산부의 지도 감독 하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농업협동조합과 교육위원회 및 농업계학교가 협조하였다.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1981년에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 공화당 정권 때의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자금 391억 원을 기금으로 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1981년에 제정되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재발족하게 된 것이다.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째로 영농후계자를 정예화하여 새마을운동의 기수로 육성하며, 둘째로 과학영농체제의 구축과 기술,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셋째로 사후관리지도의 철저와 장기적인 보조교육 및 성공사례의 발굴과 홍보 등이다.
 - 농어민후계자의 자격조건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남녀로서 영농정책의 신념과 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읍·면추진협의회가 추천하여 시·군협의회가 확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 확정된 대상자의 정신교육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전문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자금지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담당하되 융자조건은 금리를 대폭 내려 연 5%, 융자기간은 과수의 경우 4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과수를 제외한 기타 품목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81년에 처음 실시된 이 사업은 1985년에 기초성된 기금과 정부출연, 그리고 축산진흥기금 등의 전입을 통하여 189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조성된 기금은 2만 944명(그 중 여성후계자 521명)의 농어민후계자에게 1,485억 7,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종(耕種)에 5,695명, 복합영농에 4,244명, 축산에 8,305명, 과수에 206명, 특작에 500명, 수산에 1,994명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4할 정도가 축산을 택하였다. 복합영농의 일부가 축산을 겸한 후계자임을 감안할 때 축산을 택한 후계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우사업(육성·비육)을 택한 후계자는 1984~1986년에 걸친 소값 폭락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매년 1만 여명 정도의 후계인력이 선발되었는데, 이들 후계자들은 1987년 12월에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1996년 8월에 전국농어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한국농어업경영인중앙연합회”(약칭 ‘한농연’,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로 개칭하였다.
- 1987년 12월에 출범한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는 1989년 8월에 제1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를 개최했으며, 1990년 2월에는 연합회 소식지로서 ‘한국농어민신문’을 설립하였다.
 - 오늘날 한농연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지방의원협의회, 농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특히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며 <월간 한농연>, <한농연 농업동향>, <한국농어민신문>을 발행하고, ‘한국농림수산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토론회, 세미나, 성명,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고,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품목별 전문화 교육과 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으뜸농산물전시회’를 개최하여 으뜸 농산물을 개발·발굴·홍보하며 판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회원은 2014년 현재 10개 도연합회, 172개 시·군연합회, 1500개 읍·면연합회에 총 1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하여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들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하여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하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②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③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⑤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표와 같다.

① 경종분야 창업기반 조성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함

운영자금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

② 축산분야 창업기반 조성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자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추가 쿼터구입비 지원은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의 전국 쿼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시설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의 교육비 지원
 -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 ②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지원

1.2. 귀농·귀촌지원사업

○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지침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0백만원 한도 이내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 보증

(2)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3)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지원하는 것이며,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지원 단가 : 주택의 신·개축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은 2천

만원 이내

- *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4)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 목적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 지원 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 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 120만원 지급
- 연수 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 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 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5) 귀농인 컨설팅사업

- 목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하여 귀농 정착 지원
 - * 농촌 정착, 작물 재배, 경영 일반, 유통·가공분야의 경영 및 기술(현장에 로 기술) 문제 해결
- 지원 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80%, 지방비 20%
- 재원 : 1세대 당 150만원 이내

○ 특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제도는 2014년 3월 20일부터 새롭게 규정되었다.

① 지원 자격

- 도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전입한지 5년 이내)
- 귀농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수한 자
 - * 영농·영어 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및 농수

산인턴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② 지원 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 마련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③ 조건 및 용자금액

- 농어업창업자금 : 최대 2억
 - 대출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창업자금의 경우 귀농 후 5년 이내에 1회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게 한 것을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주택신축 및 구매 : 최대 5천만원
 - 대출조건 : 연리 2.7%(만65세 이상은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1회만 신청 가능

④ 신청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신청서
- 귀농인 농업창업 계획서
- 가족관계등록부
- 기타 증빙서류

1.3.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5조 및 제6조),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2) 귀농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등 마련

-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법 제13조~제18조)

(3)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

- 정부는 궁극적으로 귀농어·귀촌활성화법 시행을 통한 체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농어·귀촌의 지역경제·사회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2.1.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0월에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근의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위주의 창업농이 오히려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젊은 창업농의 초기 경영위험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수립의 배경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 :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 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이 사업의 타겟대상은 영농 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도시 청년층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최대 2년간 훈련수당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
* 1차 서류심사 → 2차 지역별 예선 → 3차 경진대회(토론식 면접 포함)
- ① 창업 준비단계 : 독립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 농대 영농창업프로그램, 선도농가·마이스터 농가·우수법인 연수프로그램 등
- 훈련수당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 지급¹

1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5년 이내 귀농자, 월 80만

- 연수종료 후 3개월 내 창업 완료 및 수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종사 의무
- ② 정착 초기단계 : 연수훈련을 이수한 자가 영농창업 예정지에 창업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창업안정자금을 지급
 - 창업안정자금은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요건 확인 후 농가당 혹은 법인당 매월 혹은 분기별 지원
 - 창업안정자금의 수급 기간의 2배 기간 영농종사 의무. 미준수시 반환
 -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후계농자금·귀농지원자금, 2030 농지 구매 및 임대 알선, 귀농인의 집 등을 우선 지원
- 2016년도 예산 : 총 2,560백만원
 - 창업 안정 지원 : 2,160백만원(300명×80만원×9개월)
 - 신규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운영 : 200백만원
 - 창업경진대회 개최 : 200백만원(40백만원×10개 시·도×50%)

2.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의 성격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미래에 대비하여 젊고 창의적인 신규인력이 농업·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 육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창업 후 2~3년간은 생활에 애로를 겪다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귀농 3~4년차부터는 농업소득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점차 경영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의욕과 성장잠재력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자가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단계에 충분한 영농교육과 정착자금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창업인턴제(창업인턴, 월 80만원), 강원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44세 이하 2년 이내 귀농자, 월 80만원) 등이 있다.

- 일반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도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2012년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약 200명 내외의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1대1 도움을 받아 창업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양산, 판로개척 등 창업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양성과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양성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 CEO를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검토하여 제6장의 추진 방안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먼저, 대상자 수에 대하여, 전국에 140여개 시·군이 존재하므로 매년 시·군별로 지원액을 할당한다고 가정하면 시·군별로는 2~3명 수준이며, 시·도 단위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30명 정도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보다는 시·군별 농가 수를 감안한 배정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 지원금에 대하여, 월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8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대상자의 연령이나 연차별로 자금 소요가 다르므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원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개인의 소비 성향을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경영컨설팅 비용이나 교육훈련비 등과 같은 건설적인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상의 정책으로 평가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사례

자금별 내용	일반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시설비 및 기업활동자금 지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창업자금과 교육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 창업교육·개발보조금·마케팅지원 등 창업계획부터 사업화까지 전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청년창업CEO를 양성
지원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지원금액	용자 12,000억원,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 1,000억원, 운전자금	보조 260억원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고정금리 년 2.7%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거치 2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거치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시설자금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 운전자금 : 연간 5억원	운전자금 : 연간 1억원	최대 1억원 이내(보조), 사업비의 70%(자부담 30%)
지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출	중진공 직접대출	중진공 직접지원
용자대상 선정	중진공 주관 기업평가	중진공 주관 기업평가	중진공 사업운영위원회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1) 청년창업전용자금 용자

○ 사업 목적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창업자금과 교육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용자 지원

○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서류심사 시에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제출
 - * 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용자규모 및 용자 범위

- 용자 규모 : 1,000억원
 - * 기업 당 최대 1억원
- 용자 범위 : 창업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용자 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적용) : 연 2.7%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억원

○ 용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직접 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중진공에 신청)

(2)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사업 목적

- 기술창업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준비 공간, 전문인력의 집중코칭, 창업교육, 개발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의 전분야를 일괄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 신청 자격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신청 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지원규모 및 한도

- 2015년 지원예산 : 260억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최대 1억원 이내 지원(청년창업자는 자부담 30%)
- 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310명 내외
 - * 입소(개별사무공간), 준입소(공동사무공간 등)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 지역별 특화산업 영위 창업자를 우선 선발(안산시 제외)

○ 지원 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절차에서부터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 생산, 판로 개척 등을 One-Stop 지원

○ 지원 절차

- 사업준비 단계(6개월) : 입교 및 개발기획(1차평가)
 - 개발 단계(6-12개월)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2차평가)
 - 시장진입 단계(6개월) : 시험생산/마케팅 및 졸업/연계지원(최종평가)
- 선정 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심사
 - *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 창업자의 의지 등을 평가
 - 심층심사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교자 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교육훈련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안산시, 천안시, 광주시, 경산시, 창원시 소재)에 입소하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단계별로 중간평가 실시 및 10% 내외 탈락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사례

(1) 배경과 목적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장비/운영비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

(2) 지원 내용

① 창업공간 지원

- 창업사무실 제공 :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기업별로 공간 배분, 사무용집기(책상,의자,파티션,캐비닛) 무상 지원
- 지원 시설 : 회의실, 공용장비실, 제품촬영실, 휴게실, 창고, Biz-test room 등

② 모니터링 지원

- 창업멘토링 지원 : 청년 CEO에 대한 상시 사업지원 및 초기 문제점 조기 발견을 통한 창업 리스크 관리 실시
- 창업티칭 지원 : 청년 CEO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집체교육 및 참여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업기반 마련 및 창업생존률 제고
- 창업코칭 지원 : 창업아이템을 유사·동일한 아이템별로 그룹핑하여 전문가를 통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창업 초기 위험 최소화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공 지도
- 창업컨설팅 지원 :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1:1 상담 진행

③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 특별 판매전 지원, 나눔 행사전 참여 및 지원, 온·오프라인 전시 및 판매 지원

- 입주업체 홍보 지원 : 성공사례집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아이템 홍보, 서울시 매체를 통한 홍보

-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 발굴

④ 창업자금 지원

- 입주기업 평가에 의한 창업활동비 지원

- 입주기업 소액 창업자금 지원

(3) 정부 사업과 연계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컨설팅 : 디자인 관련 상담이 필요한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우수디자인전문회사의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디자인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

- 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지원 :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

제3장

최근의 귀농 동향과 영농승계 및 창업농 추이

1. 최근의 귀농인력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귀농가구는 11,144 세대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귀촌가구는 33,442 세대로 전년대비 5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 세대원 수는 최근에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에 19,657명(호당 1.75명)에서 2014년에 18,864명(1.69명)으로 비슷한 추세이다.

표 3-1. 2000년대 귀농·귀촌자 추이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가구수 (세대원)	880	1,240	4,067	10,503	27,008 (47,322)	32,424 (56,267)	44,586 (80,855)
귀농 (세대원)	-	-	-	-	11,220 (19,657)	10,923 (18,825)	11,144 (18,864)
귀촌 (세대원)	-	-	-	-	15,788 (27,665)	21,501 (37,442)	33,442 (61,991)

주1) 20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결과이며, 2012년 이후는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 통계조사)이 각각 조사한 후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이다.

주2) 귀농가구와 귀촌가구 및 세대원을 구분하여 조사한 시점은 2012년부터이다.

- 귀농·귀촌의 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시·도별 분포와 추이를 보면, 2014년 자료에서 경기도가 2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2.4%, 충청북도가 11.5% 등의 순이다.
- 그 중에서도 2014년의 귀농가구 수는 경상북도가 2,172호(가구비율 39.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1,844호(가구비율 42.5%), 경상남도가 1,373호(44.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 2000년대 귀농·귀촌가구의 시도별 동향

단위 : 가구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11,220)	32,424 (10,923)	44,586 (11,144)
광역시	1	1	5	22	35	5			26	20	123	408 (346)	414 (329)	914 (343)
경기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1,027)	9,430 (931)	11,096 (947)
강원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972)	3,721 (875)	3,772 (812)
충북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918)	4,918 (872)	5,144 (906)
충남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1,214)	1,856 (1,177)	2,558 (1,237)
전북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1,238)	2,993 (1,211)	4,285 (1,204)
전남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1,733)	2,506 (1,825)	4,343 (1,844)
경북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2,080)	3,496 (2,087)	5,517 (2,172)
경남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1,434)	2,618 (1,348)	3,082 (1,373)
제주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333 (258)	472 (268)	3,875 (306)

주 : ()는 귀농 가구주.

- 최근의 귀농자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4년 귀농가구주 11,144명 중에서 50대가 4,409명(39.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3,037명(27.3%), 40대가 2,501명(22.4%), 30대 이하가 1,197명(1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2000년대 귀농·귀촌자의 연령별 동향

단위 : 가구주

구 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80	1,240	4,067	10,503	27,008 (11,220)	32,424 (10,923)	44,586 (11,144)
30대 이하	354	341	612	1,734	4,661 (1,292)	5,060 (1,253)	7,743 (1,197)
40대	293	393	1229	2,682	6,068 (2,766)	7,258 (2,510)	9,868 (2,501)
50대	187	319	1457	3,537	8,299 (4,298)	10,420 (4,289)	14,319 (4,409)
60대 이상	46	187	769	2,550	7,980 (2,864)	9,686 (2,871)	12,656 (3,037)

주 : ()는 귀농 가구주.

- 한편, 역귀농·귀촌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사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농식품부가 2014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농정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귀농인 역귀농율에 대하여 도시유턴이 1.9%, 타 농촌이주가 8.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최근 귀농·귀촌자의 역귀농 동향

단위 : 가구주 수, (%)

구 분	귀농귀촌 유지	2차 귀농	도시 역귀농	합 계
2010년	357 (89.0)	37 (9.2)	7 (1.8)	401 (100)
2011년	269 (89.7)	25 (8.3)	6 (2.0)	300 (100)
합 계	262 (89.3)	62 (8.8)	13 (1.9)	701 (100)

주: 2010년과 2011년 전국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1,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조사에 응답한 701명의 결과임.

자료: 황수철 외,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발전방안』, 농정연구센터, 2014.

2. 농업총조사에 의한 최근의 귀농 동향 분석

2.1. 2000년대 신규 농업경영주의 성격

- 201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는 논벼가 단연 우위이고 그 다음이 채소 및 산나물, 과수, 식량작물(겉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뿐만 아니라 경력이 많은 농가도 논벼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지용역비의 상승과 함께 쌀의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논벼 영농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농업총조사에서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주의 영농경력 분포를 살펴보면, 2000, 2005, 2010년의 3개년도 모두 영농경력이 많은 경영주일수록 논벼를 주작목으로 영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밭작물의 경우에는 영농경력이 짧은 경영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경력이 많은 농업경영주일수록 높은 토지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농지확보, 소득수준, 영농관행 등)이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이렇게 영농경력이 많다는 것은 경영주 연령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고령층의 보수적 성향에 기인한 위험회피적인 영농형태로서 논벼가 선택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밭작물처럼 상대적으로 토지용역비가 적게 소요되고 고급영농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영농형태에 대해서는 영농경력이 짧은 농업경영주가 영농을 주로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0년대 농업경영주의 영농경력별 영농형태를 보면, 5년 미만의 영농경력 소유자의 영농형태는 2010년에 논벼(31.3%), 화훼(18.6%), 특용작물(18.3%), 과수(17.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200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5년 미만의 신규 진입농의 주 영농형태가 논벼(40.9%), 채소(21.4%), 과수(11.7%), 일반밭작물(10.6%) 등의 순이었으며,

2005년에는 2000년과 유사하게 논벼(36.6%), 채소(20.7%), 일반밭작물(16.9%), 과수(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영농경력을 분석한 결과, 주목되는 것은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신규진입농가가 상대적으로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작물을 중심으로 영농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2010년에 5년 미만의 영농경험을 가진 신규농가가 주로 종사한 영농형태는 논벼를 제외하고는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나 축산 등은 농지구입 및 가축사육시설에 초기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기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2010년 경영주 영농경력별 영농형태 분포

단위: 천호, %

영농형태 영농경력		논벼	과수	특용 작물	채소	화훼	전작	축산	기타	합계
5년 미만	빈도	18.7	11.2	1.8	11.0	2.2	10.3	3.4	1.4	59.9
	%	31.3	18.6	3.0	18.3	3.7	17.2	5.7	2.3	100.0
5~9	빈도	25.7	13.9	2.3	14.2	2.6	12.1	5.0	1.5	77.3
	%	33.3	17.9	3.0	18.4	3.3	15.7	6.5	1.9	100.0
10~14	빈도	32.6	15.5	2.8	17.7	2.6	12.2	6.9	1.6	91.9
	%	35.5	16.9	3.0	19.3	2.8	13.3	7.5	1.7	100.0
15~19	빈도	17.8	8.1	1.4	9.7	1.4	5.1	4.7	0.7	49.0
	%	36.3	16.5	3.0	19.8	2.9	10.4	9.6	1.5	100.0
20~24	빈도	39.5	14.7	2.5	18.8	2.5	9.3	9.5	1.3	98.1
	%	40.3	15.0	2.6	19.1	2.5	9.5	9.6	1.4	100.0
25~29	빈도	19.1	7.0	1.1	9.7	1.0	3.2	5.2	0.5	46.8
	%	40.8	15.0	2.3	20.7	2.1	6.9	11.0	1.2	100.0
30년 이상	빈도	369.7	99.8	16.1	142.8	6.4	63.8	46.5	9.2	754.3
	%	49.0	13.2	2.1	18.9	0.8	8.5	6.2	1.2	100.0
합계	빈도	523.1	170.2	28.1	223.8	18.6	116.0	81.1	16.2	1,177.2
	%	44.4	14.5	2.4	19.0	1.6	9.9	6.9	1.4	100.0

자료: 해당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2. 2000~2010년간 신규진입농가의 연령별 동향

- 2000년대 이후의 농업총조사에서 신규진입(창업+승계) 농가의 추이를 보면,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신규농가는 2000년에 55,128호, 2005년에 49,840호, 2010년에 59,894호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0~05년 동안에 신규농가는 9.6% 감소하였지만, 2005~2010년 동안에는 귀농·귀촌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20.2%나 증가하였다.
- 신규농가의 경영주 특성으로, 먼저 연령 분포를 보면 2000년에는 40대가 최빈값이었으나, 2005년과 2010년에는 50대가 최빈값으로 나타났다.
 - 신규농가의 경영주 연령을 볼 때, 귀농·귀촌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2005~'10년에도 50대, 40대, 60대의 순으로 신규농가가 분포되었다.
 - 2010년의 통계에서 40세 미만 경영주의 신규농가는 총 7,737명로서, 신규 2005~'10년간 진입농가 경영주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00~'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절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

표 3-6. 영농경력 5년 미만 신규진입농가 경영주의 연령 분포

단위: 경영주 수, %

연도 연령별	2000		2005		2010		증감2000~10	
	경영주 수	비중	경영주 수	비중	경영주 수	비중	경영주 수	변화율
29세이하	2,928	5.3	1,024	2.1	742	1.2	-2,186	-74.7
30~39	13,181	23.9	6,879	13.8	6,997	11.7	-6,184	-46.9
40~49	14,267	25.9	14,226	28.5	16,087	26.9	1,820	12.8
50~59	12,766	23.2	14,543	29.2	19,612	32.7	6,846	53.6
60~69	9,973	18.1	10,461	21.0	12,442	20.8	2,469	24.8
70세이상	2,013	3.7	2,707	5.4	4,014	6.7	2,001	99.4
합계	55,128	100	49,840	100	59,894	100	4,766	8.6

자료: 해당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2000~10년 동안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신규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의 신규 진입은 감소하였으나 40대 이상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70대 이상 경영주의 신규진입의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또한 53.6% 증가폭을 기록함으로써 최근 귀농·귀촌 붐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가경영주 경력별 분포를 보면,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2000년과 비교하여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였으나, 영농경력 15년 미만의 젊은 농가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10년 미만의 영농경력 농가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귀농·귀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5년에 5년 미만의 영농경력을 가진 신규진입농가는 2000년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귀농·귀촌 붐을 반영하여 2005년 대비 2010년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신규진입농가는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신규진입농가가 8.6% 증가하였다.

표 3-7. 2000년 이후 농가경영주 영농경력 변화 추이

단위: 천호, %

연도 연령별	2000 (A)	비중	2005 (B)	비중	2010 (C)	비중	(B-A) /A	(C-B) /B	(C-A) /A
5년 미만	55.1	4.0	49.8	3.9	59.9	5.1	-9.6	20.3	8.6
5~9년	62.8	4.5	67.0	5.3	77.3	6.6	6.7	15.4	23.1
10~14년	81.9	5.9	79.0	6.2	91.9	7.8	-3.5	16.3	12.2
15~19년	68.4	4.9	48.8	3.8	49.0	4.2	-28.7	4.1	-28.4
20~24년	152.9	11.0	113.3	8.9	98.1	8.3	-25.9	-13.4	-35.8
25~29년	81.1	5.9	67.1	5.3	46.8	4.0	-17.3	-30.3	-42.3
30년이상	881.2	63.7	847.9	66.6	754.3	64.1	-3.8	-11.0	-14.4
합계	1,383.5	100.0	1,272.9	100.0	1,177. 3	100.0	-8.0	-7.5	-14.9

자료: 해당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3. 최근의 영농승계자 및 창업농 추세

3.1. 2000~2010년간의 영농승계자 추세 변화²⁾

- 농가경영주가 영농이양자(부모 등)와 함께 영농하다가 승계 받는 경우에 신
규진입농가와 그 코호트와의 차이는 영농승계농가로 규정할 수 있다.
- 인구구조방정식 $P_{t+1}^{i+1} - P_t^i = B_{t+1}^{i+1} - D_{t+1}^{i+1} + I_{t+1}^{i+1} - O_{t+1}^{i+1}$ 에서 t+1기의 i+1경
력 농가경영주 P_{t+1}^{i+1} 는 t기의 i경력 농가경영주 P_t^i 에 t+1기에 새롭게 i+1경
력의 농가경영주로 태어나는 B_{t+1}^{i+1} 에 t+1기에 i+1경력을 보유한 경영주의
사망 D_{t+1}^{i+1} 를 뺀 생물적 증감($=B_{t+1}^{i+1} - D_{t+1}^{i+1}$)에 t+1기에 i+1경력을 가진 경
영주의 순전입($=I_{t+1}^{i+1} - O_{t+1}^{i+1}$)을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왜냐하면 t+1기에 i+1경력을 가진 경영주가 새롭게 생성될 수 없으므로
 $B_{t+1}^{i+1} = 0$ 이 되고, t+1기에 i+1경력을 가진 경영주의 사망 D_{t+1}^{i+1} 은 연령별
사망률에서 구할 수 있기에 기간에 따른 경력을 감안한 농가경영주 변화는
경영주의 순전입에 의하여 상방유계(bounded above)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농가경영주의 순전입은 1기간 동안에 일정 영농경력을 보유한 채
진입한 영농승계농가 및 일정경력을 가진 퇴출 농가경영주의 변화인 사회
적 변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_{t+1}^{i+1} - O_{t+1}^{i+1}$: (i+1)년 경력의 영농승계자 수

-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영농경력별 승계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0년의 5년 미만 영농경력자 55,128호는 2005년의 5~10년 영농경력자
66,958호로 변환되며, 그 차이 11,830호는 2001~05년 동안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순영농승계를 받은 농가수이다.
- 동일한 방법으로 2000~05년의 5년 동안 10~15년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경영승계한 농가는 16,201호, 20~25년의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경영승계

2 이 부분은 김정덕, 김정호 등이 수행한 『농업생산·경영구모의 변화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2012)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한 농가호수는 44,902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3-8에서 ()의 숫자는 영농경력별 순영농승계농가호수 비중을 나타낸다. 즉, 2001~05년 동안 5~10년 미만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가구원 중 경영승계를 받은 농가호수의 비중이 17.6%에 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0~14년의 영농경력을 가진 자가 영농승계한 농가는 동일 영농경력 농가 중에서 20.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5~10년 동안 순영농승계된 농가는 2010년 영농경력 5년 이상 농가의 6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005~10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영농승계된 농가는 2000~05년과 마찬가지로 3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가구원에게 승계된 것이며, 반면에 영농경력 10~14년을 가진 가구원에게 가장 적은 비중으로 승계된 것임을 말해 준다.

표 3-8. 2000~2010년간 영농경력별 순영농승계농가 추정

단위: 호수, (%)

영농경력 \ 분석기간	2001 ~ 05년	2006 ~ 10년
5 ~ 10년 미만	11,830 (17.6)	27,527 (35.6)
10 ~ 15년 미만	16,201 (20.5)	24,943 (27.1)
15 ~ 20년 미만	-33,129 (-67.8)	-30,029 (-61.2)
20 ~ 25년 미만	44,902 (39.6)	49,265 (50.3)
25 ~ 30년 미만	-85,766 (-127.9)	-66,479 (-142.9)
30년 이상	766,793 (90.4)	687,219 (91.1)
합 계	720,831 (58.9)	692,446 (62.0)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여기서 분석기간에 따른 영농경력 보유농가의 변화는 영농승계와 퇴출을 함께 고려한 순영농승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순영농승계자를 모든 영농 경력에 대하여 더할 경우 차기 농가 중에서 신규진입농가를 제한 농가호수에 금기의 농가호수에서 퇴출가능한 농가를 제한 호수의 차이가 된다. 이는 또한 기간 변화에 따른 농가호수의 변화에 차기의 신규진입 농가호수와 금기의 퇴출가능 농가호수의 차이를 뺀 것과 동일하다.

- 2001~05년의 신규진입농가를 제외한 순영농승계농가는 72만 831호로 2005년 농가호수 127만 2,908호의 56.6%에 달하고, 2006~10년의 순영농승계농가는 69만 2,446호로서 2010년 농가호수 117만 7,318호의 58.8%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영농승계를 통한 경영이양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들어 영농승계 연령이 앞당겨지는 것과 동시에 영농승계를 미루는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0~05년은 영농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농승계를 받는 주 연령이 50대인 것에 비하여, 2005~10년은 40대로 앞당겨졌다는 데에서 2000년대 후반 들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경영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영농경력이 20~24년의 고경력 소유자가 영농승계 받는 주 연령이 50대로 늦추어지면서 이들 연령계층에 영농을 이양할 경영주들이 은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영농경력별 경영승계 및 은퇴 연령 분포: 2005~2010년

단위: 호수

경영주 연령 영농경력	20-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합계
5년이상 10년미만	466	1,629	3,645	4,772	5,135	5,175	4,320	3,199	985	-1,79	27,527
10년이상 15년미만	136	1,004	3,316	5,608	5,738	4,811	4,089	2,263	568	-2,590	24,943
15년이상 20년미만	1	261	-26	-881	-2,990	-4,808	-3,893	-4,297	-4,034	-9,362	-30,029
20년이상 25년미만	0	12	1,474	4,981	10,663	11,828	8,483	5,760	3,872	2,192	49,265
25년이상 30년미만	0	0	-5	-1,020	-10,611	-16,968	-10,770	-8,874	-6,452	-11,779	-66,479
합계	613	2,906	8,404	13,504	13,705	33,851	73,245	109,952	136,669	299,607	692,446

주: 마이너스(-) 수치는 은퇴자를 나타내며, 다만 30년 이상 영농경력 경영주의 경영승계 및 은퇴 계산결과는 계산상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농업총조사에서 5년 미만의 영농경력자는 5년 후에는 5~10년 미만의 영농경력자가 되는데, 2000년의 5년 미만의 영농경력 55.1천호는 2005년의 5~9

년 영농경력 농가의 상한선이 된다.

- 예를 들어 2005년 영농경력 5~9년의 농가호수는 67.0천호로서 2000년의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호수 55.1천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0년 영농경력 10~14년의 농가호수 또한 91.9천호로서 2005년의 영농경력 5~9년 농가호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최근의 창업농에 대한 의향 추세

- 이하에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는 농산업 창업 대상자(미래의 창업농)를 대상으로 창업농에 대한 의사와 시기를 조사한 결과만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당초에는 창업농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정하였으나,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표본조사에 그치게 되었다.
- 취농교육 청년들 총 237명을 대상으로 창업의사와 시기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업농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를 계층별로 보면, 귀농·귀촌센터와 위탁교육기관 교육훈련생들은 77%가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과대학 재학생들은 약 50% 정도가 장래에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귀농귀촌센터교육생은 100%가 창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탁교육생들은 68%가 창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북대와 제주대만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나, 역시 감귤 등 고소득 영농이나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학생들이 영농창업 의사를 높게 나타냈다.
- 취농교육 청년들의 창업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가 3년

이내에 창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60% 정도는 3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문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창업농의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므로 제4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표 3-10. 취농교육 청년들의 창업시기 조사결과

설문 내용 조사대상	조사 인원	창업 의사		창업 시기			
		있음	없음	1년 이내	1~3년	3~5년	5년 이 후
귀농귀촌센터 교육생	35(100.0)	35(100.0)	0(0.0)	12(34.3)	20(57.1)	1(2.9)	2(5.7)
위탁교육 훈련생	94(100.0)	64(68.1)	30(31.9)	7(7.4)	30(31.9)	20(21.1)	48(51.1)
-여주농전	20(100.0)	16(80.0)	4(40.0)	3(15.0)	7(35.0)	5(25.0)	5(25.0)
-전주생명고	11(100.0)	8(72.7)	3(27.3)	1(9.1)	2(18.2)	0(0.0)	5(45.5)
-경남자영고	22(100.0)	12(54.5)	10(45.5)	1(4.5)	3(13.6)	5(22.7)	10(45.5)
-경북대	20(100.0)	15(75.0)	5(25.0)	0(0.0)	5(25.0)	2(10.0)	10(50.0)
-경상대	21(100.0)	13(61.9)	8(38.1)	2(9.5)	3(14.3)	6(28.6)	10(47.6)
농과 대학생	108(100.0)	50(46.3)	58(53.7)	1(0.9)	2(1.9)	14(12.9)	42(38.9)
-경상대	48(100.0)	24(50.0)	24(50.0)	-	-	-	-
-제주대	30(100.0)	17(56.7)	13(43.3)	1(3.3)	2(6.7)	9(30.0)	18(60.0)
-충북대	30(100.0)	9(30.0)	21(70.0)	0(0.0)	0(0.0)	5(16.7)	24(80.0)
합 계	237(100.0)	149(62.9)	88(37.1)	20(8.4)	52(21.9)	35(14.8)	92(38.8)

주: 의향 조사결과이므로 합계 수치보다는 비율에 의미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 제4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될 것임.

제4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농업·농촌분야에 관심이 많고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층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따른 지역이나 품목의 선택, 창업규모 등 제반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부록1 의견조사표)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추진방향을 사전에 소개하고 지원대상이나 자금지원액, 지원기간 등 창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지역 귀농·귀촌센터 교육훈련생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현장 실습 및 전문가 과정 등 농고·농대 위탁교육생, 지방대 농과대학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기간 : 2015. 11. 25(수) ~ 12. 05(토)
- 설문지 회수 : 현장 회수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활용
- 조사 대상자 : 237명

표 4-1.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대상	조사자 수	설문조사자 수	비고
·귀농·귀촌센터 교육훈련과정 교육생(전북도)		35명(15%)	
·농고 및 농대 교육위탁과정 교육생 (여주농전,전주생명고,경남자영고,충북대,경상대)		94 (40)	
·농과계 대학교 재학생 (경북대,경상대,제주대)		108 (45)	
합 계		237 (100)	

주: 설문조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

2.1. 일반사항

- 설문조사에 응한 교육훈련생과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도시지역 귀농·귀촌센터 교육생이 57세, 농고 및 농대의 위탁교육훈련생은 28세, 농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2세로 각각 나타나 본 설문조사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 응답자 중에서 귀농·귀촌센터 교육훈련생과 농고와 농대 위탁교육생의 41%는 기혼자로 나타났고, 농과대학생은 모두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전체의 65%가 고졸로서 가장 많고, 전문대졸 이상이 32%, 중졸이 3% 정도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설문조사 대상학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타 지역 거주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237명) 중 재학생은 73%(158명), 전문직 종사자 11%(23명), 취업준비 9%(20명), 회사원과 자영업 8%(17명), 농업분야 종사 3%(7명), 주부·무직이 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에서 연령층이 높은 귀농·귀촌센터 교육훈련생과 농고 및 농대 위탁 교육생들(129명) 중 취업준비는 7%(18명), 전문직 종사자 25%(32명), 회사원과 자영업 12%(15명), 농업분야 종사 5%(7명), 주부·무직이 9%(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이들 교육생 중에서 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회사원과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39%(50명)를 차지하여 도시민이 귀농·귀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 설문조사 일반사항

조사대상	조사자성격	조사인원	평균연령	혼인		학력				거주지역				직업							
				미혼	기혼	중졸	고졸	전문대	대졸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취업준비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재학생	농업분야	주부무직
귀농귀촌센터교육생		35	57	2	33	3	6	4	22	33		1	1		6	7	4	4		2	12
위탁교육훈련생		94	28	73	21	5	53	4	32	16	1	3	13	61	12	3	18	1	55	5	
-여주농진		20	28	15	5		14	3	3	14	1	1	2	2	1			1	15	3	
-전주생명고		11	43	4	7				11					11	2		8			1	
-경남자영고		22	27	16	6	5	7		10					22	1		10		11		
-경북대학교		20	24	18	2		15		5	2		2		16	4	1			15		
-경상대학교		21	23	20	1		17	1	3					21	4	2			14	1	
농과 대학생		108	22	108			96		12	4		26	30	48	2	2	1		103		
-경상대		48	22	48			43		5					48		2	1		45		
-제주대		30	21	30			30						30						30		
-충북대		30	22	30			23		7	4		26		2					28		
합계		237		183	54	8	155	8	66	53	1	30	44	109	20	12	23	5	158	7	12

2.2. 창업이유와 창업시기

- 앞으로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전체조사자의 63%는 창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를 계층별로 보면 귀농·귀촌센터와 위탁교육기관 교육훈련생들은 77%가 창업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농대 재학생들은 약 50% 정도가 장래에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농산업창업 이유를 묻는 9개 항목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농업이 비전과 매력이 있다’가 27%(전체 누적답변 396개 중 106개)로 가장 높고 ‘삶의 질 향상’이 21%, ‘새로운 일자리 선택수단’이 18%, ‘쾌적한 자연환경’이 16%로 각각 나타났다.
 - 그러나 연령계층별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는 농업의 비전과 매력·삶의 질 향상·쾌적한 자연환경이 모두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고, 새로운 일자리 선택수단이 낮게 나타난 반면, 젊은 계층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선택수단이 선호도가 높아 미래에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농산업 창업의 이유

창업 이유	계층 구분	
	연령이 높은 계층	젊은 계층
·새로운 일자리 선택수단	15%	23%
·삶의 질 향상	23	17
·쾌적한 자연환경	21	13
·농업의 비전과 매력	25	29

- 창업시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가 3년 이내, 64%가 3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으나 연령층이 높은 계층에서는 49%가 3년 이내, 51%가 3년 이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창업 이유와 창업 시기

조사대상	설문내용	조사인원	창업의사		창업 이유								창업 시기				
			있음	없음	일자리	삶의 질	사업실패	자연환경	비전매력	타인권유	도시실증	가족건강	자녀교육	1년 이내	1~3년	3~5년	5년 이후
귀농·귀촌센터 교육생		35	35		17	17	2	18	20		4	12	1	12	20	1	2
위탁교육 훈련생		94	64	30	25	45	3	39	47	7	5	6	4	7	30	20	48
-여주농전		20	16	4	3	11	1	8	12	3	1	2	2	3	7	5	5
-전주생명고		11	8	3	3	6	1	4	6		1	2	1	1	2		5
-경남자영고		22	12	10	3	11		10	8		2	1	1	1	3	5	10
-경북대		20	15	5	7	9		12	12	3					5	2	10
-경상대		21	13	8	9	8	1	5	9	1	1	1		2	3	6	10
농과 대학생		108	50	58	31	23	2	17	39	11	3	5	3	1	2	14	42
-경상대		48	24	24	15	13		8	17	3	1	1	3				
-제주대		30	17	13	12	7	1	5	14	6	1	2		1	2	9	18
-충북대		30	9	21	4	3	1	4	8	2	1	2				5	24
합 계		237	149	88	73	85	7	64	106	18	12	23	8	20	52	35	92

2.3. 창업지역과 품목선택

-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경상지역, 호남지역, 수도권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 경상지역은 응답자의 40%, 호남지역은 19%, 수도권지역은 18%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자의 현재 거주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의 귀농·귀촌센터 교육생의 지역선호도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창업지역의 선택 이유에서 응답자의 54%는 고향 또는 연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환경이 좋은 지역이 23%,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 지역이 10%, 농업소득 등 경제성을 고려한 지역이 6%로 각각 나타났다.
- 그러나 서울지역의 연령대가 높은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은 74%가 농촌 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농산업창업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쾌적한 삶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 창업 지역과 창업 작목

설문 내용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창업 지역					지역 선택 이유					작목 선택					작목 선택 이유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경상	고향연고	재배유리	접근성	농촌환경	농업소득	정착비용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수화훼	축산	특작기타	고소득	영농환경	영농용이	지역특성
귀농귀촌센터 교육생	35	12	20	1	2			1	7	23			6	6	13	6	3	12	3	7	11
위탁교육훈련생	94	14	3	5	12	54	55	8	8	9	5	3	12	12	19	27	15	42	14	10	21
-여주농전	20	11	2	2	3	2	11	1	5	2	1		3	3	4	7	3	8	4		7
-전주생명고	11	1			7	1	8		1				2	2	2		3	2	2	3	2
-경남자영고	22	2	1		1	16	11	1	1	4	2	1	2	2	5	5	3	9	1	4	6
-경북대학교	20			3	1	14	14		1	1	1	1				15	3	8	6		4
-경상대학교	21					21	11	6		2	1	1	5	5	8		3	15	1	3	2
농과 대학생	108	14	2	21	30	38	63	2	7	18	8	3	3	27	33	12	23	55	13	9	25
-경상대	48	5			3	35	25	2	3	8	3	1	2	22	9		10	23	6	8	6
-제주대	30	2		2	26		19		2	4	5		1	2	18		4	15	2		13
-충북대	30	4	2	19	1	3	19		2	6		2		3	6	12	9	17	5	1	6
합 계	237	40	25	27	44	92	118	11	22	50	13	6	21	45	65	45	41	109	30	26	57

- 재배품목(작목)은 전체적으로 과수화훼가(30%)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채소와 축산은 각각 21%, 특작 등이 19%, 식량작물은 10%로 나타나 전통적인 식량작물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연령대가 높은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과 위탁교육기관 교육생들은

식량작물 선호도가 15%인 반면, 농대학생들은 식량작물 선호가 3%에 그쳐 젊은 계층일수록 전통작물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작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목선택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49%는 소득이 높은 품목을 선택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결정한 경우가 26%, 나머지는 영농환경이 좋은 것과 영농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였다.

2.5. 창업자금조달과 정착기간

- 창업자금은 본인자금으로 조달(준비)하는 것 보다는 주로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귀농·귀촌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응답자 214명 중 본인이 자금을 전액 조달하는 경우는 15%(32명)에 불과하였고 85%(182명)는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귀농·귀촌센터와 위탁교육기관 교육훈련생들은 본인의 전액자금조달 비중이 18%로 나타나 전체(15%)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은 농협 등 금융기관대출이 35%, 정책자금 융자 등이 51%, 가족이나 친지 등 조달이 14%로 조사되어 그 중에서 정책자금 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도시지역거주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은 자금 조달을 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자금 융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초기의 창업자금규모는 1~2억원이 가장 많았고(33%), 다음으로 5천만원~1억원(26%), 2~3억원(17%)순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도 17%를 차지하였다.
 - 도시지역거주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은 2억원 미만이 80%를 차지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착소요 기간은 응답자의 42%가 3~5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0%는 2~3년, 2년 이하는 18%에 그침으로써 정착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업 창업에 정착한 후의 연간 소득목표액은 응답자의 42%가 3~7천만원, 23%가 1~3천만원, 21%가 1억원 이상, 15%가 7천만원~1억원 수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소득 기대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창업자금 조달과 정착기간

조사 대상	설문 내용	조사인원	창업자금 조달					외부자금 조달			창업자금규모					정착기간				소득목표 (연간)				
			본인전액	외부 50%	외부 70%	전액외부	가족친지	금융기관	정책자금	기타	오천만	일억만	이억만	삼억만	오억만	오억이상	6월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3천 이하	3천 7천	7천 1억	1억 이상
	귀농귀촌센터 교육생	35	5	18	9	2		9	20		5	9	10	6				5	15	14	13	16	2	2
	위탁교육훈련생	94	15	44	17	2	15	24	36	8	8	19	27	13	13	7	1	14	33	40	18	34	14	22
	-여주농진	20	5	9	6		2	9	6	1	3	7	4	2	1	2		5	9	6	5	9	3	3
	-전주생명고	11	2	6	1			2	5	2	2	2	5				1	1	3	4	5	2	2	
	-경남자영고	22	3	8	9		4	4	9	2	2	1	7	4	4	2		4	8	8	5	6	2	7
	-경북대학교	20		10	8		4	5	8	1		3	5	1	7	2		1	5	12	1	6	3	8
	-경상대학교	21	5	11	3	2	5	4	8	2	1	6	6	6	1	1		3	8	10	2	11	4	4
	농과 대학생	108	12	49	31	10	12	34	41	11	3	29	35	18	12	6	1	18	41	40	20	43	17	23
	-경상대	48	3	18	14	8	6	10	19	7	2	12	11	7	7	4		7	15	21	10	22	5	6
	-제주대	30	6	16	7	1	4	14	6	4	1	9	13	6		1	1	7	15	4	4	13	6	7
	-충북대	30	3	15	10	1	2	10	16			8	11	5	5	1		4	11	15	6	8	6	10
	합계	237	32	111	57	14	27	67	97	19	16	57	72	37	25	13	2	37	89	94	51	93	33	47

2.6. 농산업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 농산업창업을 할 경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의 67%는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24%)과 사업자금 조달(24%), 영농기술의 습득 문제(19%)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였다.
 - 다음으로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11%)과 재배품목의 적절한 선택(10%), 도시문화생활의 포기과 인간관계의 단절(8%)을 걱정하였다.
-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책자금지원(37%)과 농산물판매지원(22%), 영농기술지원(21%), 주택지원 등(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농산업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설문 내용 조사 대상	조사 인원	예상 애로사항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				
		생활비부담	사업자금조달	영농기술습득	재배품목선택	주민과의유대	농촌환경적응	도시문화격리	가족간의갈등	정책자금지원	영농기술습득	영농체험지도	주택농지알선	농산물판매
귀농귀촌센터교육생	35	14	16	26	11	8	8	7	5	17	17	3	13	14
위탁교육훈련생	94	62	63	48	24	14	16	20	13	63	37	10	24	40
-여주농진	20	14	15	7	4	6	2	5	4	14	5	1	6	12
-전주생명고	11	4	6	6	3	2	3	1	2	8	3		2	5
-강남자연고	22	13	11	14	8	3	4	4	3	13	8	2	7	10
-경북대학교	20	13	16	9	2	3	3	4	3	14	9	3	6	4
-경상대학교	21	18	15	12	7		4	6	1	14	12	4	3	9
농과 대학생	108	78	74	52	31	15	12	24	12	83	40	13	24	41
-경상대	48	34	35	23	12	5	6	9	2	37	15	4	9	19
-제주대	30	22	19	18	7	4	3	7	4	22	18	5	7	6
-충북대	30	22	20	11	12	6	3	8	6	24	7	4	8	16
합계	237	154	153	123	66	37	36	51	30	163	94	26	61	95

2.7.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 등

-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를 늘이는 효과(크게 도움 내지 다소도움 포함)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84%를 차지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6%로 나타났다.
 - 특히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은 91%가 청년일자리 늘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위탁교육기관 훈련생들은 83%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초기 창업자금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6%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창업자금지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또는 사업종료 후 포기가 가장 많았고(39%), 대상자 선정시의 적정성 유지가(26%) 다음을 차지하였다.
 - 실제로 영농활동과의 연관성 유지 문제(17%)와 대상자의 적정관리 문제(14%)도 함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대상자와의 위화감 우려는 소수에 그쳤다.
-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묻는 질문에서 30대(30~39세) 제한이 42%, 20대(29세 이하) 제한이 41%라고 답변하여 전체적으로 30대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83%를 차지하였다.
 - 연령층이 높은 도시지역 귀농·귀촌센터 교육생들은 연령제한을 좀 더 높게 규정하여 40~50대로 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타난 반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탁교육기관 훈련생들은 87%가 연령제한을 30대 이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4-8.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지원자격 등

설문 내용 조사 대상	조사인원	청년일자리 효과				초기 창업자금 지원 필요성				창업자금 지원시 우려되는 부문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				
		크 게	다 소	도 움	의 미	크 게	다 소	도 움	의 미	중 도 중 료 후 포 기	대 상 자 선 정 적 정 성	실 제 영 농 연 관 성	미 대 상 자 위 화 감	대 상 자 관 리 문 제	2 0 대	3 0 대	4 0 대	5 0 대	6 0 대
		도 움	도 움	안 됨	없 음	도 움	도 움	안 됨	없 음										
귀농귀촌센터교육생	35	14	17	1	2	28	5		1	13	9	6	1	4	1	9	12	4	5
위탁교육 훈련생	94	29	48	11	5										33	45	7	4	1
-여주농진	20	4	9	2	5										11	4	2	2	
-전주생명고	11	3	2	6											3	8			
-경남자영고	22	6	15	1											8	11	1	1	1
-경북대학교	20	6	11	2	1										9	10		1	
-경상대학교	21	10	11												2	12	4		
농과 대학생	108	27	60	6	14	32	14	2		18	12	8	2	7	59	41	7		
-경상대	48	10	29	3	6	32	14	2		18	12	8	2	7	25	19	4		
-제주대	30	9	15	1	4										19	10			
-충북대	30	8	16	2	4										15	12	3		
합 계	237	70	125	17	21	60	19	2	1	31	21	14	3	11	93	95	26	8	6

2.8. 농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응답자의 39%가 3년 이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2년 이내가 31%, 4년 이내가 21%, 1년 이내가 9%를 나타내어 비교적 지원기간이 긴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업자금 월별 지원규모도 금액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가 월 100만원 이내를 희망하였고, 월 120만원 이내 39%, 월 80만원 이내 15%로 나타났고, 월 50만원 이내는 3% 수준에 그쳤다.

- 창업자금 지원 시기는 월별 지급(43%), 분기별 지급(42%), 반기별 지급(9%), 연별 지급(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지원조건 등

설문 내용	조사 인원	창업자금 지원 기간				창업자금 지원규모(월별)				창업자금 지급시기				지원금반환 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0 만원 이내	80 만원 이내	100 만원 이내	120 만원 이내	월별 지급	분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연별 지급	영농에 미종사 수급 기간만큼	영농에 미종사 수급기간 2배이상	영농에 미종사 수급기간 3배이상
귀농귀촌센터 교육생	35	5	11	13	5	3	8	13	10	21	9	3		14	15	5
위탁교육훈련 생	94	9	25	39	21	4	9	40	41	40	42	8	4	44	40	10
-여주농전	20	5	6	4	5	2	2	8	8	8	10	1	1	6	12	2
-전주생명고	11	3	3	4	1	1		7	3	5	4	2		7	4	
-경남자영고	22	1	5	8	8	1	3	10	8	12	8		2	11	10	1
-경북대학교	20		6	12	2		4	7	9	8	9	2	1	8	9	3
-경상대학교	21		5	11	5			8	13	7	11	3		12	5	4
농과 대학생	108	7	36	40	23	1	19	45	41	39	46	11	10	46	43	18
-경상대	48	2	15	17	13	1	5	16	25	17	18	5	7	23	20	5
-제주대	30	3	15	9	2		9	13	7	12	11	5	1	11	9	9
-충북대	30	2	6	14	8		5	16	9	10	17	1	2	12	14	4
합계	237	21	72	92	49	8	36	98	92	100	97	22	14	103	98	33

-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의무영농기간)에 창업자금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향치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44%가 응답하였고, ‘수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42%가 응답하였으며, ‘수급기간의

3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14%로 각각 조사되었다.

2.9.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이번 의견조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 중 주요사업을 예시하고(표 4-10), 농업과 농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훈련생들과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4-10.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항목

프로그램명	알고 있음	모름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농림축산식품부)	()	()
○ 귀농·귀촌 교육실시(시군농업기술센터, 정부지원 민간기관)	()	()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시군)	()	()
○ 귀농인의 집 조성(시군)	()	()
○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농촌진흥청)	()	()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시군, 농협)	()	()
○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시군)	()	()

- 조사결과(표 4-11), 234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원프로그램 내용 중 3개 이상 알고 있다가 106명(45%), 1~2개 정도 알고 있다가 52명(22%), 전부알고 있다가 22명(9%), 전부 모른다가 54명(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응답자 중 농업농촌분야에 관심이 많은 귀농·귀촌센터 교육생과 위탁교육기관 훈련생은 3개 이상 알고 있거나 전부 안다는 답변이 67%, 전부 모른다는 답변이 14%로 나타나 농대생 응답자에 비해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분포

설문내용 조사대상	조사 인원	전부 모름	1~2개 정도 알고 있음	3개 이상 알고 있음	전부 알고 있음
귀농귀촌센터교육생	35	1	3	18	12
위탁교육훈련생	94	17	21	46	9
-여주농전	20	3	5	11	1
-전주생명고	11	2	3	5	1
-경남자영고	22	3	6	10	2
-경북대학교	20	4	4	9	3
-경상대학교	21	5	3	11	2
농과 대학생	108	36	28	42	1
-경상대	48	12	9	27	
-제주대	30	13	9	6	1
-충북대	30	11	10	9	
합계	237	54	52	106	22

3. 조사 결과의 시사점

- 2016년에 새로 도입할 계획인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이면서 젊은 계층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귀농·귀촌사업과 농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도시거주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귀농·귀촌과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조사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평균연령은 큰 의미는 없으나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면, 도시민 중심의 귀농·귀촌센터 교육생은 57세, 위탁교육기관 훈련생은 28세, 농과대학생은 22세로 나타났다.
- 조사자의 41%가 기혼이며, 학력은 고졸이 65%, 전문대졸 이상이 32%로 분포하였다.
- 조사자의 직업은 재학생이 73%, 전문직 종사자 11%, 취업준비 9%, 회사원과 자영업 8%, 농업분야 종사 3%, 주부·무직이 6%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원과 전문직, 취업준비생이 32%를 차지하여 귀농·귀촌에 관심을 보였다.
- 조사자의 63%가 앞으로 창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창업이유로서는 농업의 비전과 미래(27%), 삶의 질 향상(21%), 새로운 일자리(18%), 쾌적한 자연환경(16%)순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연령이 높은 층은 자연환경이나 삶의 질에 비중을 둔 반면, 젊은 층은 농업의 장래성과 새로운 일자리 선택수단을 중시하였으며, 창업시기는 연령층에 높은 계층은 시기를 짧게 잡고 있으나 젊은 계층은 길게 잡는 경향을 보였다.
- 창업지역의 선택 순위는 고향·연고지(54%), 농촌환경(23%), 대도시 접근성(10%), 농업소득 등 경제성(6%)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계층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촌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배품목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식량작물보다는 농업부가가가치가 높은 과수·채소·특작과 축산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작목은 소득이 높은 품목(49%)과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26%)을 먼저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영농환경이 좋은 것과 영농하기가 쉬운 것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 창업자금은 85%가 외부에서 조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정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부자금은 농협 등 금융기관(35%)이나 정책자금(51%), 가족·친지(14%)로부터 조달을 희망하였고, 창업자금 규모는 1~2억원(33%), 0.5~1억원(26%),

- 2~3억원(17%), 3억원 이상(17%) 등의 순이었다.
- 도시지역 귀농·귀촌센터 교육생은 대부분 2억원 미만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 정착기간은 3~5년이 42%, 2~3년이 40%, 2년 이하는 18%로 나타나 정착기간은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 연간 소득목표액은 3~7천만원(42%), 1~3천만원(23%), 1억원 이상(21%) 순으로 조사되어 소득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업초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생활비부담(24%)과 자금조달(24%), 영농기술 습득(19%)을 꼽았고, 다음으로 주민과의 유대와 농촌생활 적응(11%), 재배품목 선택(10%), 도시생활과의 격리의 포기과 인간관계의 단절(8%)을 걱정하였다.
 -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자금 지원(37%)과 농산물판매 지원(22%), 영농기술 지원(21%), 주택지원 등(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84%가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를 늘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초기 창업자금의 지원 필요성에서 응답자의 96%가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창업자금지원시에 우려되는 사항으로 중도 또는 사업종료 후 포기(39%)와,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26%), 영농활동과의 연관성 유지(17%)와 대상자의 적정관리(14%)가 지적되었다.
 -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질문에서 83%가 30대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30대가 42%, 20대가 41%)
 -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응답자의 39%가 3년 이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년 이내 31%, 4년 이내 21%),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응답자의 42%가 월 100만원 이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 120만원 이내 39%, 월 80만원 이내 15%).
 - 창업자금 지원시기는 응답자의 85%가 월별 또는 분기 단위의 지급을 희망하였다.
 - 창업자금 반환을 위한 의무영농기간에 대하여 44%는 수급기간만큼을,

42%는 수급기간의 2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원프로그램 중 ‘3개 이상 안다’가 45%, ‘1~2개 안다’가 22%, ‘전부 안다’가 9%로 나타났고, ‘전부 모른다’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과 같이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짧은 기간에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조사지문 내용도 충분하지 못하였지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업 이외에 좀 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농촌은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다. 젊은 청년계층이 귀농하여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발전에 일정수준 역할과 보람을 찾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창업이유에서 연령이 높은 계층은 농촌을 쾌적한 자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가치로 본 반면, 젊은 계층들은 새로운 일자리의 선택과 농업의 비전과 매력을 주요가치로 보았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농업 이외에도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대상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농지나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의지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 대상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청년들을 기준으로 볼 때 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결혼 후 5~10년차에 접어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부모에게서 지원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승계농의 경우는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농촌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후반의 노령층의 도시거주 자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정착단계까지 3년간(준비단계 1년, 사업단계 2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100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80만원 수준으로 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을 유형화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청년 창업농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홍보 대상을 도시청년들로 한다면 그들이 모이는 장소나 인터넷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도시 지하철이라든지 대학교 홍보매체 활용 등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도 2015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계획(화천군 사례)

(1) 목적

-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대책 추진
-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2) 사업개요

- 지원 기간 : 2015. 4월 ~ 2016. 3월(1년간)
- 사업 규모 : 3명
- 지원금 지급 :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 1년차(보조결정 후 12개월) : 월 800천원 / 2년차(12개월) : 월 500천원
 - * 2년차 사업비는 2016년 예산으로 교부
- 총사업비 : 28,800천원(도비 14,400, 군비 14,400)
- 사업절차 및 방법 : 강원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3)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15. 3. 2 ~ 3. 13(2주간)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현장지원팀
- 모집 인원 : 3명
- 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 :
 - ① 지원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

②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하도록 함.(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는 봉사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협약서(지침 별지 10)」 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③ 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 (중복지원 불가)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본 계획과 강원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귀농인들에게 적극 홍보 및 사업신청 지원
 - * 시·군별 배정인원을 참조하여 사업공고 철저 : 시·군보 및 시·군청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적극 활용
 -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 업무추진 철저
- 사업공고 등 홍보 철저
 - * 화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 *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적극 활용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후 명단을 도청에 제출

제5장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정책의 외국사례

1. 구미 국가의 귀농 동향과 정책³

1.1. 프랑스

1.1.1 귀농 동향

○ 귀농·귀촌의 시대별 특징

- 1970년대: 소규모로 귀농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서 값싼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기존의 농업인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때는 귀농과 관련하여 별 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다.
- 1980년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귀농 현상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농업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C의 공공지원이 시작되었다.

3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2005)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 1990년대 말~현재: 1990년대 말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과 과제를 수행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의 일부는 로컬 푸드나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시장을 창출하였으며, 또한 일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농촌 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귀농·귀촌이 프랑스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교육 측면에서 부모 및 자녀들이 혜택을 보았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이 많아졌다.
 - 지역 상점이 유지되고, 소규모지만 고기술의 산업 활동 및 기업 등이 증가하였다.
 -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이 농촌에 추가로 유입되어 사회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특히, 공간 사용을 둘러싼 충돌 등)

1.1.2 귀농 관련 정책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
 -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농업인의 자녀가 아니면서 귀농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연령: 18세 ~ 39세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또는 농업기술 자격증(BTA) 이상
 - 연수계획: 집단연수가 포함된 맞춤형 연수계획(PPP)을 수립하여 이수해야 하고, 이수 사실을 도지사로부터 승인 취득
 - 영농계획: 5년간의 영농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귀농 지원금: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확인한 후에 지급
- 귀농정보센터 운영
- 각 도별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법, 규칙, 지원 자격, 지원 종류 등)를 제공한다.
- 정부의 귀농지원금
- 귀농지원금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EU)에서 반반씩 부담한다.
 - 귀농지원금은 전업농 여부와 지역(평야·조건불리·산악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최소 4,000 유로에서부터 최대 35,900 유로까지로 알려진다.
- 귀농 이후의 지원
- 귀농 이후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5%) 공제받으며,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받는다.
 -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는 감면되며, 5년 동안 비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 조기은퇴제도
- 조기은퇴제도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와 어울리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되었다.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 2년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

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는 1~2년 동안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촌거주 노인을 위한 은퇴주거단지(Maison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ée: MARPA)
 - 은퇴주거단지는 1986년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사회보장(Mutualite Sociale Agricole: MSA)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 20여 채의 개인 주택과 공동생활 공간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합주거단지이고, 각 주거공간은 개별적이며, 거주자들은 자신의 가구와 물품으로 집을 꾸밀 수 있다.
 - 공동생활 공간으로는 주방, 식당, 세탁실, 도서관, 다용도실, 정원, 텃밭 등이 있으며, 의료·안전·가사도우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2. 영국

1.2.1. 귀농 동향

- 영국의 농촌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총인구 5,300만 명 중에서 농촌지역에 930만 명(17.6%)이 거주하고 있다.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별 거주인구 비율은 도시가 82.5%, 농촌 소도읍(rural town and fringe)이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이 5.5%, 과소화지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이 3.3% 등이다.
 - 평균 연령(median age)은 농촌인구가 45세로 도시인구(37세)보다 더 많으며, 농촌의 인구가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농촌정주 공간 중에서 밀집주거 지역이 분산주거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1년에 농촌-50(rural-50) 지역은 22,9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고, 농촌-80(rural-80) 지역은 23,0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심도시(major urban) 지역은 65,00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의 평균 연령이 도시지역보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젊은 인력이 도시로 유출이 많은 데 반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 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되었다.
 - 영국의 농촌에는 통근자, 퇴직자, 별장 소유자 등의 이주로 인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약 8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농촌 이주 수요가 증가하여 농촌의 평균 주택가격이 도시보다 높은 실정이다.

1.2.2. 귀농 관련 정책

- 신규 창업(Fresh Start)
 - 영국의 신규 창업(Fresh Start)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지원과 보조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Curry Report(2002)'에 근거를 두고 있다.
 - Fresh Start Academy를 통하여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농업 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Fresh Start Academy는 주로 저녁시간에 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리즈로 개최되는데, 사례발표 등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 2006년 이후 Fresh Start Academy에 참여한 총 교육생 수는 500명에 달하고, 최근에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Specialist Academy)가 새로 도입되어 2011년 현재 총 12개의 지역 아카데미(5개는 일반, 7개는 전문)가 있다.
 - Fresh Start는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35세 정도이다.

- Fresh Start의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수 서비스로는 ① 산업 기술(초·중급 IT, 경영, 고객센터,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 ② 기능적 기술(수학, 영어, ICT), ③ 고용기술(고용지원 및 작업장 기술,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면접 준비, 지원서 작성 등), ④ 인적 개발(생활기술, 금전관리, 신뢰감 및 자존감 정립), ⑤ ESOL(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교육), ⑥ 비즈니스 계획(창업 및 발전), ⑦ 실전 연수(지역의 고용주들과 함께) 등이 있다.

- 청년농업인클럽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에서는 10~26세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사회 활동 등을 제공한다.

- 경사지 농장승계 지원(Hill Farm Succession Scheme)
 -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승계받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의 농업인으로부터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전수받게 된다.
 - 경사지 농장승계 훈련생들은 자신의 사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빈집 재이용 촉진
 - 1992년에 전국적인 주택캠페인단체가 빈집청(Empty Home Agency: EHA)을 운영하면서,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10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을 개·보수하여 매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개·보수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건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비어 있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빈집 정비와 점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 재량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점유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미관 등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직접개입에 의한 임시 정비 등이 가능하다.

1.3. 미국

1.3.1. 귀농 동향

○ 미국의 농촌인구

- 2013년에 농촌지역(non-metropolitan counties)에 거주하는 인구는 4,6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 농촌지역은 미국 전체 면적의 72%을 차지한다.

○ 귀농·귀촌의 지역적 특성

- 자연경관이 좋거나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은퇴자나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 농업이나 광업이 주된 산업인 농촌지역은 인구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 의존적인 지역은 대평원(great plains)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업 의존적인 지역은 서부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애팔래치아(Appalachia)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 1990년대 이래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소도시로 나타나는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은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 경관, 높은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있다.
- 농촌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서부 산맥지역, 북서부 해안지역, 오대호 상류 지역, 남부 산악지역,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동부지역 등이다.
-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의 노동시장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원거리 농촌지역보다 귀촌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 귀농·귀촌의 인종적 특성

- 전통적으로 미국 농촌에는 백인이 가장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 농촌은 인종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히스패닉(Hispanic)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백인이나 흑인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 2000년대에 미국 농촌에 유입된 인구(100만 명) 중에서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달하고, 농촌지역에 이민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면 중서부지방의 농촌지역,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 등에 집중되고 있다.

1.3.2. 귀농 관련 정책

○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인(초보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하여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한 보조금(Farmer and Rancher Competitive Grant) 혜택도 있다.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 자금 교육, 현장실습, 봉사활동, 기술지원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융자 지원(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Loans)은 10년 이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

- 미국 농무부(USDA)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인구 5만명 이하의 도시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4-H와 같은 농업인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융자금 지원은 ① 가축이나 종자, 농기계 등의 구입, ② 농업 관련 기구나 장비의 구입, 임차, 수리, ③ 프로젝트 운영 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융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융자금의 상환 일정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가 가축 사육이나 농작물 재배인 경우에는 가축이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체 또는 신규 사업체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s)은 원격 교육 네트워크나 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

- 광고 및 홍보 활동: ① 전국 일간지 및 잡지, 방송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문자·여행자 안내센터 등에 배포한다. ② 광고 및 홍보물을 보고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잠재적 은퇴이주자를 대상으로 개별지역이 밀착형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지역으로의 은퇴이주에 관한 홍보 매거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④ 지역에 연고를 가진 출향 은퇴자의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한다. ⑤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평가과정을 거쳐 커뮤니티를 은퇴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certified retirement community program)을 실시하여 해당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은퇴자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 기술적 지원: ① 은퇴자 유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제공한다. ② 은퇴자 유치에 관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한다.
-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① 주정부가 협약이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민간 개발업체의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장려한다. ② 주정부가 은퇴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개발에 직접 투자한다.

2. 일본의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정책⁴

2.1. 청년취농자 정책의 배경과 요지

- 일본에서는 이른바 1945~1947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계층을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부르는데, 달리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로서 이들이 정년퇴직하는 2000년대 이후에 귀농·귀촌 열풍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구상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명칭은 ‘청년 취농급부금’이라고 지칭한다.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경영개시형).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 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영농준비형).
 - ※ 농지를 친척으로부터 임대받아도 지원대상이 되나 5년 이내에 본인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위반시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
- 농림수산성은 2014년 6월에 ‘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수립하여 청년취농자 확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일본 사례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발간한 『일본의 청년취농 지원사업』(2015)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청년취농자 확보의 목표 : 신규 취농하여 정착하는 농업자를 배증시키고, 10년 후에는 40대 이하의 농업취업자 수를 40만명으로 확대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 향후 약 90만명의 기간적 종사자 및 고용 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60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매년 평균 약 2만명의 청년층이 신규로 취농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림 5-1. 일본의 농업취업자 소요 전망

토지이용형 작물 367만ha (2010년 경지 및 작부면적 통계)		토지이용형 작물 이외 (채소·과수·축산 등)	
자 급 적 농 가 등	담당자가 생산하는 면적 (전체의 80%) ⇒ 294만ha	<u>기간적 농업종사자 약 50만명</u>	
	1인이 10ha 정도를 경작 가정해서 ⇒ 기간적 농업종사자 및 고용자의 필요 수는 약 30만명	주요 농가 채소 27만명 과수 등 18만명 축산 9만명	<u>고용자(상고) 약 10만명</u>
↓		↓	
약 30만명		약 60만명	
약 90만명 소요			

2.2. 청년취농지원금 '준비형'의 지원 요건

- 농업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연수에 전념하는 취농 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
 - 1) 취농 예정시의 연령이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이고, 농업경영자가 되기 위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 2) 독립·자영취농 또는 고용취농 또는 부모 아래서 취농을 지향하는 경우

- 부모 아래서 취농을 목표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을 승계하거나 또는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자가 될 것

3) 연수계획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도도부현 등이 인정한 연수기관·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에서 대략 1년 이상(1년 이상 또는 1,200시간 이상) 연수

②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기 위한 요건

a.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이 그 기술력, 경영능력 등의 면에서 연수처로서 적절할 것

b.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의 경영주가 지원 대상자의 친척이 아닐 것

c.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과 과거에 고용계약을 맺은 적이 없을 것

4)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

5) 생활보호, 구직자 지급제도 등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의 타 사업에서 중복하여 수급하지 않았을 것

6) 원칙적으로 '청년신규취농자네트워크(一農네트)'에 가입할 것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1) 적절한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 지원주체가 연수계획 측으로부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원칙 45세 미만의 나이에서 취업하지 않은 경우
* 준비형을 수급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종료 후

3) 지원기간의 1.5배(최저 2년간)의 기간에 독립·자영취농 또는 고용취농 또는 부모 밑에서 취농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4) 부모 밑에서 취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2.3. 청년취농지원사업 '경영개시형'의 지원 요건

○ 경영리스크의 부담이 있는 신규취농자가 경영을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의 기간 동안에 지원한다.

1) 독립·자영취농 시의 연령이 원칙 45세 미만의 인정신규취업자로서 농업 경영자가 되려는 강한 의욕을 가진 자일 것

* 신규취농자: 시·정·촌에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 규정하는 '청년등 취농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일 것

2) 독립·자영취농일 것

- 본인이 작성한 '청년취농계획 등'에 따라 주체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가 농지의 소유권 또는 농지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농지가 친척으로부터 임대한 것이 과반일 경우에는 5년간의 지원기간 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

② 주요 기계와 시설을 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③ 생산물과 생산자재 등을 지원 대상자의 명의로 출하·거래할 것

④ 지원 대상자의 농산물 등의 판매나 경비의 지출 등 경상수지를 지원 대상자 명의의 통장 및 장부에서 관리할 것

* 부모 밑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아버지의 경영으로부터 독립한 부문을 경영하는 경우이거나 아버지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5년 이내에 경영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사업 대상이 된다.

3) '청년취농계획 등'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독립·자영취농 5년 후에는 농업(자신의 생산에 관련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 농가민박, 가공품 제조, 직접 판매, 농가레스토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계획일 것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4조의 제1항에 규정한 '청년 등 취농계획'에 청년취농 지원금 신청의 첨부서류를 구비할 것

- 농가 자제의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와 동등의 경영리스크(새로운 작목의 도입 경영의 다각화 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정·촌장으로부터 인정 받을 것

4) 사람·농지플랜에서의 위치 등

- 시·정·촌이 작성한 '사람·농지플랜'에 중심이 되는 경영체로서 위치할 수 있을 것

5) 생활보호자 등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의 타 사업과 중복되어 지급할 수 없으며, 농업 고용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 아닐 것

6) 원칙적으로 '청년신규농업자네트워크(一農네트)'에 가입할 것

○ 지원 대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부부가 함께 취농하는 경우(가족경영 협정, 경영자원의 공유 등에 의해 공동경영자인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지원금을 1.5인분으로 지급한다.

② 복수의 신규 취업자가 농업법인을 신설하여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로 각각 지급한다.

③ 2014년 4월 이후 독립·자영취농한 자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원은 취농 후 5년까지로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정지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제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이 350만 엔을 초과한 경우

* 2015년도(2014년도 수정예산을 포함) 이전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50만엔

② '청년등취농계획등'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태만하거나 적절한 취농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시·정·촌이 판단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반환 조치된다.

① 농지의 과반을 친척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친척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5년간의 지원기간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최근에 들어 선진국들도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하는 2000년대 이후의 사회적 이슈로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귀농·귀촌의 배경과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른 유형별 대책이 필요하다.
 - 귀농·귀촌인의 농촌으로 이주 동기에서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자연친화적 생활, 오락,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농업 및 농촌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단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일수록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청년들의 신규취농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영농교육 단계부터 농장 창설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 신규 취농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수나 훈련을 받고, 실현가능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농촌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 영농교육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 이후에 취득한 영농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프랑스의 경우, 귀농 이후 5년 동안에 ①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

5~15%) 공제하고, ②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하며, ③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하며, ④ 비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 산악지대와 같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의 재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 프랑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융자금의 금리가 평야지역은 2.5% 정도인데 비하여 산악지대는 1% 정도이다.
 - 영국은 경사지 농장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농업·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빈집을 귀농·귀촌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영국에서는 빈집청(Empty Home Agency)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을 개보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개보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일본은 ‘빈집 재생추진사업’을 통하여 ① 빈집발생 억제대책, ② 빈집의 적정관리 대책, ③ 활용가능 빈집 대책, ④ 노후위험 빈집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농촌의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정년은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랑스에서는 ‘농촌거주 노인을 위한 은퇴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노인농업공동체에서 도시의 은퇴한 노인을 농촌재생의 주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도시의 은퇴자를 농촌에 유치하기 위하여 주정부에서 ① 광고 및 홍보 활동, ② 기술적 지원, ③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④ 관광 진흥을 통한 은퇴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6장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1. 농산업창업 지원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검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⁵

1.1.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내용

(1) 사업 목적

- 영농 및 농산업에 의욕있는 청년을 농촌지역에 유치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 농업경영 창업을 필두로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산업의 인력기반을 공고히 한다.
- 특히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

5 이 부분의 일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정리하였다.

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지원 대상

- 원칙적으로 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창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일반경종 농업에서는 임차지 확보가 가능하므로 39세 이하도 신규취농이 가능하지만, 지역의 농업인력 상황 및 영농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를 들어 시설원예와 축산은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림 6-1.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의 개념 비교

<u>현 재</u>	<u>향 후</u>	<u>비 고</u>
기존 농업경영인	기존 농업경영인	2014년말 기준 1,121천명 연간 10~12천명 수준
(귀농인)	(귀농인)	
	창업농업인	연간 1~2천명 추정

(3) 대상자 선정과 심사

- 사업 목적의 효율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로이 영농을 시작하는 ‘신규창업농’(도시지역 신규창업농과 농촌지역 신규창업농)과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영농을 승계하는 ‘승계창업농’(도시지역 거주 승계농과 농촌지역 거주 승계농)과 구분하여)을 구분하여 선정한다.
- 이 사업이 정부의 신규사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실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귀농 추세와 대도시 주변의 귀농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지역별로 배정하되, 지자체에서는 위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창업계획서 심사 시에 창업유형별로 배정 비율(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① 도시지역 거주 신규창업농을 50%, ②농촌지역 거주 신규창업농을 30%, ③승계농으로서 영농기반을 갖춘 창업농을 20% 등으로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업영농계획 심사 시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①창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중장기 비전(20%), ②구체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실현 가능성(30%), ③농촌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기여도(20%), ④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습득 의지와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판단(20%) 등이다.

(4) 사업 내용 : 신규 영농창업자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창업준비 단계와 창업초기 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최대 3년간 연수훈련수당 또는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그림 6-2 참조)

가) 창업준비 단계 : 독립적인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 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에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지원 내용 : 영농창업연수자에게 훈련수당을 최대 1년간 월 80만원씩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연수 종료 후 3개월 내에 창업 완료하도록 하고, 훈련비 수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종사를 의무화한다.

- 지원 요건 : ①영농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②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 ③구직자 지원제도 등 타 소득지원 사업과 중복수급이 아닐 것, ④승계 창업농의 경우에는 창업 후 일정기간(예 : 2년) 내에 농업경영 승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을 명기할 것, ⑤청년 신규창업농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 등이다.

- 지원금의 지급 정지 : 지원대상자가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중도에 연수훈련 중단, 연수훈련실적 현장확인조사에 비협조적 또는 연수훈련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정지한다.

그림 6-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단계	필요내용	지원방법	지원주체	추진시기
청년창업농	창업단계	창업자금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연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귀촌지원사업 우선대상자로 포함(지침 개정 필요)	농식품부	'17년
		창업안정자금	○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 지원	농식품부/지자체	'16년
		창업정보 (실행관련 내용 중심)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 - 창업지원사업, 시장동향 등	농정원	'16년
			○ 인터넷 카페, 밴드 구성 - 지역별, 품목별 구분(홈페이지 내)	청년창업농	'16년
	교육·컨설팅	○ 타 사업 멘토링 제도와 연계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 활용 교육 등	지자체	'17년	
		○ 청년 농산업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침 개정 필요)	농식품부	'16년	
	창업준비단계	창업준비자금	○ 훈련수당 월 80만원(최대 1년)	농식품부/지자체	'16년
		창업정보 (준비사항 중심)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 - 창업계획서 작성, 창농 동향, 창업지원사업, 창업 가이드, 성공사례 등	농정원	'16년
			○ 인터넷 카페, 밴드 구성 - 지역별, 품목별 구분(홈페이지 내)	청년창업농	'16년
		교육·컨설팅	○ 영농창업 준비과정 / 기존 교육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자체	'16년
○ 상담 서비스 제공 - 선도농가 등에게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내에서 질의응답	농정원		'16년		
	○ 창업계획서 작성, 창업전략 수립 (마케팅 전략 등), 시장정보 등	농정원	'17년		
	창업준비수준 점검	○ 자가역량시스템 구축, 제공 - 창업자 역량(기업가 정신, 창업준비도 점검 등), 시장조사(시장구조분석, 외부 환경분석 등)	농정원	'16년	
관리기관	○ 사업시행지침 및 운영매뉴얼 개발(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창업경진대회 운영방법, 사후관리, 각종 양식 등)				'15.12~'16.1월
	○ 인터넷 홈페이지(청년 창업농) 및 관리자 페이지 개발 - 청년 창업농 관리(창업수행일지, 영농일지, 교육이수실적, 사후관리, 청년 창업농 DB, 훈련수당 및 창업안정자금 집행실적 관리 등)				'16.2~8월

- 창업지원 대상자가 창업에 불성실하거나 당초 목적인 계획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
 - 지원금의 일부 반환 : 당초 목적인 사업을 게을리하여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금의 지급정지기간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 지원금의 전액 반환 : ①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농을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수급 기간 2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③승계농의 경우 2년 이내에 부모 영농을 계승하거나 공동경영자가 되지 않은 경우, ④연수훈련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연수훈련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등은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 나) 창업초기 단계 : 연수훈련을 이수한 자가 영농창업 예정지에 창업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창업안정자금을 지급한다.
- 지원 내용 : 창업농업인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단, 연수기간 제외) 지급하되,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등록 등의 일정요건이 확인된 후에 농가당 혹은 법인당 매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 *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후계농자금·귀농지원자금, 2030 농지 구매 및 임대 알선, 귀농인의 집 등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 요건 : ①영농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②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③주요 기계·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있을 것, ④생산물·생산자재 등을 지원대상자 명의로 출하·거래하고 있을 것, ⑤농산물 등의 판매액·경비지출 등 경영수지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또는 장부로 관리하고 있을 것, ⑥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⑦구직자 지원제도 등 타 소득지원 사업과 중복수급이 아닐 것, ⑧창업농장 소재지 시·군에 주소지를 둘 것, ⑨승계창업농에 대해서는 창업 후 일정기간(예: 2년) 내에 경영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기할 것, ⑨청년 신규창업농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 등이다.

- 지원금 반환 요건 : ①지원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②수급 기간의 2배 이상 농업경영하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 등은 반환 요건에 해당한다.
- 지원금의 지급 정지 : ①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②농업경영을 중단한 경우, ③현장 확인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등은 지급 정지 요건에 해당한다.
- 창업지원 대상자가 창업에 불성실하거나 당초 목적인 계획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
 - 지원금의 일부 반환 : 당초 목적인 사업을 게을리하여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정지기간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 지원금의 전액 반환 : ①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농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②수급 기간 2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③승계농의 경우 2년 이내에 부모 영농을 계승하거나 공동경영자가 되지 않은 경우, ④허위로 창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표 6-1. 농산업창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주체별 사업추진절차

	지원대상자(창업농)	지원주체(지방자치단체)	농정원
창업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계획서 제출 ○ 연수자금 지원신청 ○ 연수실적보고(반기) ○ 주소등 변경사항신고 ○ 창업계획 보고(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계획서 심사 및 대상자 선발(시·군 및 시·도) ○ 창업자금(연수) 지원(집행)관리(시·군) ○ 연수실적관리, 현장확인조사 및 조치(시·군) ○ 연수자 영농기술습득 상황 확인, 연수성적관리(시·군) ○ 창업계획 관리 및 창업여부 확인(시·군) ○ 위반자 제재조치(자금지원 정지 및 반환)(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교육 기관선정통보 (지자체) ○ 연수교육프로그램 운용
정착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영농계획서 제출 ○ 창업자금 지원신청 ○ 창업영농실적 보고(반기) ○ 주소등 변경사항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영농계획 승인(시·군) ○ 창업자금지원(집행)관리(시·군) ○ 창업 영농실적 확인(시·군 및 시도) ○ 위반자 제재조치(자금지원 정지 및 반환)(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농현장 확인점검 (지자체협조) ○ 창업농경영 실태 조사

(5) 자금관리와 연수훈련 등

가) 창업안정자금의 집행 관리

- 농산업분야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경영자금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 창업자에게 창업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영농 창업프로그램 연수 비용 및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 창업안정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농 정착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엄격한 내용보다는 최소한의 확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업농이 창업안정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전액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최소 60% 이상은 연수훈련비 또는 영농 실습비용에 지출하거나 영농자재의 구입 및 기타 영농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반기에 한번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청년 창업농에 대한 연수훈련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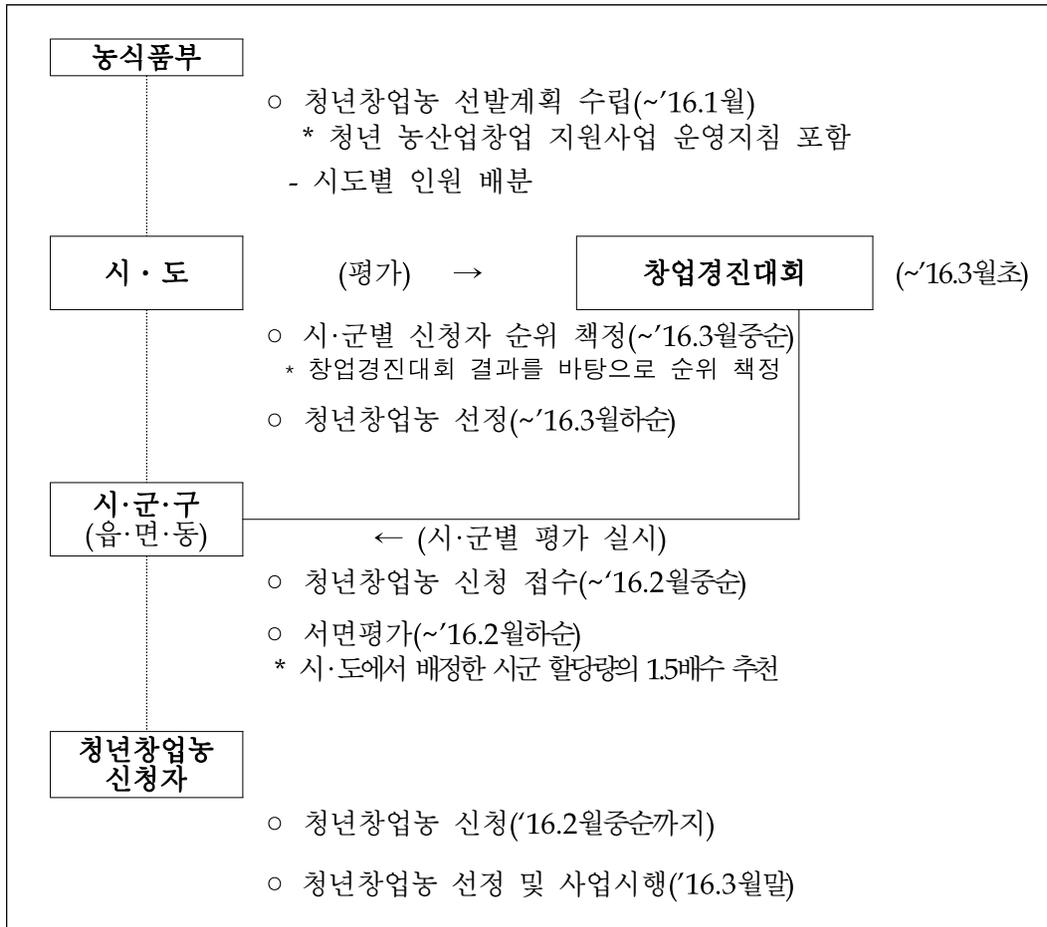
- 창업농의 연수훈련은 중앙기관(농정원)주관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자체 또는 대학 및 민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의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을 통하여 선도농업인 농장의 영농기술 습득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 준비농에 대해서는 그 실습기간을 본 창업 준비단계 교육훈련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업농이라고 하여 영농교육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핵심내용인 영농실습교육 이외에도 FTA체결 확대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과제, 그동안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내용,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1.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 농림사업실시요령에 근거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그림 6-3 참조).
 - 사업주관 : 농식품부장관, 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 추진절차 : 농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량을 배분하고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 ① 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배정 → ② 시·도 : 시군별 사업량 배분 → ③ 시·군·구 : 추천 → ④ 시·도 : 면접 및 심사,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⑤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승인·통보 → ⑥ 시·군·구 : 사업 시행 → ⑦ 시·군·구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특히,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2016년도 농산업창업 지원대상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 → 2차 지역별 예선 → 3차 도 단위 경진대회 평가(토론식 면접 포함)”로 규정된다.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창업농 지원계획 및 선발계획 수립하여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한다.
 - 도시민으로서 창업농이 되고자 하는 청년은 소정의 ‘창업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관련서류(주민등본, 농업경영체등록서류 등)와 함께 시·군에 제출한다.
 -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선별과 아울러 상대평가 순위를 매겨 시·도에 최종 선발을 의뢰한다. 특히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를 추천하도록 한다.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의 신청자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선발한다.

그림 6-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추진체계(2016년도)



- 참고로, 최근 들어 중소기업 분야의 창업 인큐베이팅은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 벤처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란 예비 벤처창업자나 신생 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 법률, 회계, 자금, 인력, 홍보 등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인큐베이팅이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업 발굴 → 투자 → 전문컨설팅 서비스 → 사업화 → 공개 투자” 등의 일반적인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창업 인큐베이팅은 모든 것을 창업지원센터의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를 갖추으로써 각종 전문서비스를 지원한다.

1.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사업 중에서 농업분야에 개인들에게 포괄적인 형태로 직접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농정사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일반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일찍이 청년창업자에게 정착단계까지 투자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일부 사업을 실시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농산업 분야에서 이를 채용한 것은 늦게나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예비창업자들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등 창업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2016년에 처음 실시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이 창업농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최대 3년간 지원할 경우에 약 29백만원 수준으로 3억원의 저리융자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이차보전액 매년 약 3% 예상시).
 - 창업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창업농 개인에게는 큰 혜택이며, 지원자격이 안 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농업인이나 외부인에게는 관심과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도 그만큼 주시하는 눈들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정부의 사업추진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창업준비단계, 그리고 정착초기단계와 정착후 안정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5년 정도는 관심

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지속적인 영농교육훈련과 아울러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등 농자재의 부담경감내용 등을 안내하여 창업농이 농산업경영에 정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존의 농림사업은 주로 3~5년의 영농경력자가 주된 정책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금리 3%에 1인당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농촌정착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을 2천만원(금리3%)까지 융자하고 주택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창업농에게는 조기정착을 위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농지를 수탁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인 물색,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의 편리함과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장기적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략 4~5개 등급으로 나누어 단계에 맞는 영농기술지도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창업농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희망과 비전이 없는 하위등급은 과감히 도태시키거나 창업안정자금을 차등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영농의무 기간만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영농을 수행하고 있는 창업농도 당연히 자금회수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창업지원자금 지원자에 대한 통일된 사후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공통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면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 창업농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 네트워크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후관리를 추진할 수 있고, 영농현장이나 창업자를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상당수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창업농의 유형(도시 또는 농촌지역 신규창업농,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 승계농), 창업농 인적사항(성명, 나이, 전·현 거주지, 전화번호, 학력, 가구원수 등), 창업농 선정일자와 주 창업품목, 연수훈련사항(연수기간, 주 연수품목, 연수기관 등), 농지 등 영농자산 확보상황, 창업자금 지원현황, 연수 및 창업영농계획서와 추진실적, 지침 위반내용과 제재조치사항(안정자금 지급정지 및 반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창업농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 간에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
 - 창업농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필요시 농정원 협조)
 - 창업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방침 수립, 통보
 - * 창업농의 사후관리에 관한 기관별 역할과 추진내용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제도개선
 - 정책자금지원 현황 및 각종 부담경감 내용통보, 지방비 감면사항 등 지원 방침 수립
 - ②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사후관리계획 운용(해당 시·군 세부계획 통보)
- 창업안정자금 관리(해당 시·군 자금배정 등 자금집행관리)
- 청년 창업농 대상자 선정 및 시·군의 창업농 사후관리결과 관리(본부 보고)
- 농업분야 정책자금지원 및 각종 부담경감, 지방비 감면사항 등 업무 협조

③ 시·군

-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농정원 협조)
- 창업안정자금 집행관리(시·도 협조)
- 창업농 연수·영농계획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관리(시·도 및 농정원 협조)
- 청년 농산업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협조(농정원)
- 농업분야 정책자금지원 및 각종 부담경감, 지방비 감면사항 등 업무 협조

④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농식품부 협조)
- 청년 농산업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 및 교육훈련(대학 및 민간교육전문기관)
- 창업자금 지원농가 사후관리 협조(현장 확인점검)(지자체 협조)

표 6-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분담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농정원
기획 홍보	○ 창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창업 지원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 및 대상자 접수·심사	○ 창업농 지원사업 홍보 ○ 창업농 교육프로그램 운용
사후 관리	○ 창업 사후관리 기본 방침 수립 ○ 창업안정자금 배정 ○ 창업사업 총괄관리	○ 창업사후관리계획시행 및 사업관리 ○ 창업 사후관리 지원 (시·군 협조) ○ 창업안정자금 관리	○ 창업사업 홍보(협조) ○ 창업안정자금 집행 및 관리 ○ 창업 영농계획 및 추진상황 관리	○ 창업농 사후관리 협조 (현장확인점검) ○ 창업농 경영실태 점검
정책 지원	○ 정책자금지원 및 부담경감, 세제지원 등 방안 검토	○ 정책자금 지원 및 부담경감, 지방비 감면 등 업무협조		

2. 기타 관련지원사업의 추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밖의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①취농·창업교육 지원 사업, ②귀농·귀촌 창업 교육비 지원, ③초기 정착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농·창업교육 지원사업

- 교육 목적 : 귀농·귀촌 취농·창업에 관심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귀촌 관심 및 실행 유도
- 교육 내용 : 귀농·귀촌 정책 소개 및 귀농선배 창업사례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산업 창업방법론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

표 6-3. 최근의 취농·창업교육 실시기관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기관명	한국농수산대학	카네기직업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직업전문학교
기 수	총2기 (기수당 30명)	총1기 (30명)	총2기 (1기 35명, 2기 25명)	총2기 (1기 22명, 2기 26명)
교육 일정	(1기) 9/16~10/14, (2기) 10/10~10/24	10/7~10/23	(1기) 9/2~11/4, (2기) 9/2~11/4	(1기) 8/21~9/19, (2기) 9/4~10/16
교육 시간	총52시간 (이론 44h, 실습 8h)	총80시간 (이론 40h, 실습 40h)	총50시간 (이론 30h, 실습 20h)	총50시간 (이론 30h, 실습 20h)

- 대학 정규교과 운영 : 각 1학기 과정으로 운영

* 2014년 : 4개 대학 109명, (2015.1학기) 3개 대학 81명, (2015.2학기) 7개 대학 235명

- 2014년 2학기(4개 대학) : 서울시립대(20명), 상명대(39명), 수원대(21명), 공주대(29명)
- 2015년 1학기(3개 대학) : 충남대(35명), 전남대(20명), 동국대(26명)

- 2015년 2학기(7개 대학) : 서울시립대(30명), 수원대(31명), 건국대(29명), 을지대(25명), 서정대(22명), 동국대(39명), 공주대(59명)
- * 전문강사료, 창업계획서 작성 자료조사 등의 비용 일부 보조(대학별 12백만원)
- 창업계획서 공모전 : 수상작은 창업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시상(장관상 등)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게재 및 공유

(2) 귀농·귀촌 창업 교육비 지원

- 청년층의 귀농·귀촌 교육 참여시에 교육비 자부담분의 50% 추가 경감

(3) 초기 정착지원 대책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적용
 - * 보증 비율을 90%(일반 : 80~85%)로 확대하고, 간이신용조사 적용(1억원까지)
-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농지구입자금도 저리(1%, 5ha 한도)로 지원
- 선도농가실습 지원 및 선배 귀농인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창업농 기술습득 지원

3.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3.1. 농산업 창업의 긍정적 효과

- 2000년대 들어 나라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이와 아울러 농업경영주의 세대교체와 맞물리면서 농업인구가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발한 귀농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 최근 들어 순농촌지역 또는 중산간지역의 지자체들이 지역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을 더욱 전문화하고 과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른바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2014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중에서 도시로 역이주(逆移住) 의향이 있는 사람(8.6%)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다(45.5%)라는 평가가 실패이다(5.1%)라는 평가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공적인 편이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났다.
- 앞의 제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창업농 지원사업이 귀농·귀촌 뿐만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는데, 요즈음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이다. 특히 귀농·귀촌 센터 교육생들은 91%가 청년일자리 늘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위탁교육기관 훈련생들은 83%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반면에, 2000년대 들어 창업농 수가 연평균 1만 명(경영주가구) 수준으로 증가하고는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기는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10% 내외로 파악되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30대 청년층들은 창업후 2~3년간은 생활에 애로를 겪다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귀농 3~4년차부터는 농업소득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점차 경영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 따라서 30대는 물론 40세 미만의 성장잠재력이 큰 청년창업자가 영농에 조

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단계에 사업계획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미흡한 사항과 향후 검토과제

- 먼저, 개념 설정부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농산업창업’의 정의는 농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 용어는 기존에 농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창업농은 영농을 새로 시작(개시)하는 의미이므로, 예를 들어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농업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농산업의 창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다만, 타인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영농을 승계 받더라도 기존의 영농관행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영농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기술 및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창업농’은 영농을 기본으로 농산업을 창업하여 일정기간(예를 들면 5년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농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귀농인과도 구분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 농산업의 창업이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영농(營農)을 기본으로 생산·가공·유통사업에 나아가서 농촌관광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유통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이 후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의 추진 배경이 도시 청년들의 농산업창업을 촉진시켜 도시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고 농업의 인력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취지인 점과,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대상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정책 대상은 일차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신규로 영농하

려는 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계농의 경우에는 위의 농산업창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이 도시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정부의 수혜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존 농업인들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2016년도에 추진될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부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먼저, 창업농 대상자 수에 대하여, 전국에 140여개 시·군이 존재하므로 매년 시·군별로 지원액을 할당한다고 가정하면 시·군별로는 2~3명 수준이며, 시·도 단위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30명 정도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행정구역 단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농업인구나 농가 수를 감안한 배정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 창업농 지원금에 대하여 월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8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대상자의 연령이나 연차별로 자금 소요가 다르므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창업농 지원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소비 성향을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과 같은 건설적인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농산업 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마찬가지로 ‘농산업창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관련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 검토가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및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제2장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먼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시행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후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하여 선발 후 7년 이내 기간 동안 개별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다음으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하여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지침을 간략하게 소개하

였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 제3장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대상자에 대하여 통계적인 방법과 정책 계획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부터 연간 300명 정도의 창업농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귀농 세대원 수는 최근에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에 19,657명(호당 1.75명)에서 2014년에 18,864명(호당 1.69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2014년의 귀농가구 수를 보면 전체가 11,144호(역귀농 2% 추정시 10,921)이며, 그 중 30대 이하는 1,197호(역귀농 2% 추정시 1,173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과 청년 일자리 해소, 귀농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에 의한 귀농 확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귀농가구 수는 매년 3~5%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년에는 30대 이하 청년 귀농자는 최소한 15~20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201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정책대상을 추정하였는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영농승계를 통한 경영이양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06~10년간의 순영농승계농가는 69만 2,446호로 2010년 농가구 117만 7,318호의 58.8%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 농업총조사에서 2005년 영농경력 5~9년의 농가호수는 67.0천호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영농경력 10~14년의 농가호수 또한 91.9천호로서 2005년의 영농경력 5~9년 농가호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4장에서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설문조사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지역 귀농·귀촌센터 교육훈련생과 농정원의 농업현장 실습 및 전문가 과정 등 농고·농대 위탁교육생, 지방대 농과대학의 재학생 등의 총 23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조사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평균연령은 큰 의미는 없으나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면, 도시민 중심의 귀농·귀촌센터 교육생은 57세, 위탁교육기관 훈련생은 28세, 농과대학생은 22세로 나타났다.
- 조사자의 63%가 앞으로 창업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창업이유로서는 농업의 비전과 미래(27%), 삶의 질 향상(21%), 새로운 일자리(18%), 쾌적한 자연환경(16%)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지역의 선택순위는 고향·연고지(54%), 농촌환경(23%), 대도시 접근성(10%), 농업소득 등 경제성(6%)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금은 85%가 외부에서 조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정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업초기의 애로사항으로는 생활비부담(24%)과 자금조달(24%), 영농기술 습득(19%)을 꼽았고, 다음으로 주민과의 유대와 농촌생활 적응(11%), 재배 품목 선택(10%), 도시생활과의 인간관계 단절(8%)을 걱정하였다.
-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응답자의 39%가 3년 이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년 이내 31%, 4년 이내 21%),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응답자의 42%가 월 100만원 이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원프로그램 중 ‘3개 이상 안다’가 45%, ‘1~2개 안다’가 22%, ‘전부 안다’가 9%, ‘전부 모른다’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정착단계까지 3년간(준비단계 1년, 사업단계 2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100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80만원 수준으로 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을 유형화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에서는 귀농 동향 및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정책의 외국사례에 대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행되고 있는 창업농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연구자료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이들 선진국에서는 청년들의 신규취농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영농교육 단계부터 농장창설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농촌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 특히 일본 정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구상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취농급부금’이라는 명칭으로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경영개시형)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 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영농준비형)에도 지원하고 있다.

- 제6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야 할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먼저,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목적에서 “농업경영 창업을 필두로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산업의 인력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창업(예정)자로 하되, 지역의 농업인력 상황 및 영농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컨대 시설원예와 축산은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창업지원자의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지원은 신규 영농창업자로 선발된 자에게 최대 3년간 훈련수당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 준비단계에는 독립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에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정착초기단계에는 연수훈련을 이수한 자가 영농창업 예정지에 창업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창업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제도적인 조치로서, 농산업 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산업창업 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관련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정책 건의

- 이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창업지원대상 청년의 세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하며, 지원조건은 최대한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0~25세는 진로탐색 기간이므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26~30세는 결혼 여부에 따라 진로 결정
 - 31~39세는 정착단계에 지원이 필요
- 정책 내용이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인 만큼 귀농·귀촌자의 구분없이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정착단계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자는 영농뿐만 아니라 농촌의 전통문화와 예술 및 지역교육, 농촌사회를 가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귀농 입장에서만 정책지원 대상을 본다면 귀농·귀촌정책이 편협해질 우려가 있다.
 - * 예를 들어 2014년 귀농·귀촌자 약 4만명 중에서 귀촌자는 대략 3만명이 고 귀농자는 1만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귀농과 귀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 귀농·귀촌에 유리한 계층은 자금동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40~50대로서 외부자금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젊은 청년들은 모든 면에서 기반이 취약하므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주거 문제, 농지 문제 등으로 30세 이하의 창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30세 이상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판단된다.
 - 농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한 청년들도 귀농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귀농 창업지원 사업의 정책지원 대상을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하는 경우에 1년차는 월 80만원을, 2년차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처음에 20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창업농이 없어 실제 지원은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 * 충남 홍성에서는 귀농·귀촌농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1단계로 1~2년차는 협업농장 실습기회 부여, 2단계는 영농과 겸업을 하거나 농업관련 시설 및 영농조직 취업 또는 농번기 농촌현장에 새참 제공하는 틈새시장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창업농 지원대상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연수생들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농업경영에서도 농기계나 농용시설을 위한 자본 투자가 많이 소요되므로, 개인이 창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의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결성하여 창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것은 영농자금의 한계가 가장 크므로, 우선은 농업법인에 귀농하여 사업마인드도 함양하면서 월급 형태로 저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청년층의 농산업창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교육기관 등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20대 초·중반 청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농업경영주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충원하면서 건설한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청년층의 농산업 참여가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전국귀농운동본부’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영농교육에 대하여 정부가 안정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확대하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농업경영을 직업인 동시에 사업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정책사업 홍보 대상이 주로 도시청년들이므로 그들이 자주 찾는 장소나 인터넷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도시 지하철이라든지 대학교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설문조사

1.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농업·농촌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결과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설문조사기간 : 2015. 11. 25부터 12. 05까지

○ 설문지 회수 : 현장 직접회수 또는 이메일<환경농업연구원([www//sari@sari.re.kr](http://www.sari.re.kr))>, FAX(02-3474-8840)

* 설문조사 서식은 환경농업연구원 홈페이지(www.sari.re.kr/알림마당/연구조사서식)에서 다운

2015. 11. 25

(사)환경농업연구원장 김 정 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관련 문의 : (사)환경농업연구원 ☎ 02-3472-8830~1

(연구위원 정영환 ☎ 010-****-****)

※ 사)환경농업연구원은 농식품부 허가 비영리법인단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사업과 교육·컨설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홈페이지 www.sari.re.kr)

설문조사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업에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사업경영자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창업안정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조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세
2. 귀하는 결혼한 상태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3. 귀하의 최종 학력(중퇴 포함)은 어느 수준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이상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지역 ② 강원지역 ③ 충청지역 ④ 호남지역(제주 포함) ⑤ 경상지역
5.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취업준비 중 ② 회사원 ③ 공직자 또는 전문직 ④ 자영업 ⑤ 재학중(학생)
⑥ 농업분야 종사 ⑦ 주부 또는 무직

농산업 창업

6.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귀농하여 창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창업농이 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질문 6의
①을 선택한 경우) (, ,)
① 새로운 일자리의 선택수단 ② 농촌생활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③ 실업중이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④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⑤ 농업이
비전과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⑥ 부모나 친지의 권유 ⑦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 ⑧ 가족의 건강유지를 위해 ⑨ 자녀교육을 위해 ⑩ 기타 ()
8. 창업을 할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1년 이내 ② 1~3년 ③ 3~5년 ④ 5년 이후
9. 창업농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
 ① 수도권지역 ② 강원지역 ③ 충청지역 ④ 호남지역(제주포함) ⑤ 경상지역
- 9-1.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 또는 연고지 ② 작목선택에 유리한 지역 ③ 대도시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
 ④ 농촌환경이 좋은 지역 ⑤ 농업소득 등 경제성을 고려 ⑥ 창업 정착비용이 적은 지역
10. 창업농을 하신다면 어떤 품목(작목)을 선택할 예정입니까? ()
 ① 식량작물 ② 채소 ③ 과수 ④ 화훼 ⑤ 축산 ⑥ 특작 ⑦기타
11. 위의 품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② 영농환경이 좋아서 ③ 영농하기가 쉬워서
 ④ 지역에 알맞는 품목이라고 생각해서
12. 귀농하여 창업을 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가실 계획입니까? ()
 ① 가족과 함께 이주 ② 가족은 정착 후에 합류 ③ 본인 혼자 이주 ④ 기타
13. 농산업 창업을 하신다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
 ① 본인 전액준비 ② 본인준비 50%, 외부조달 50% ③ 본인준비 30%, 외부조달 70% ④ 전액 외부조달
- 13-1. 외부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입니까? ()
 ① 가족이나 친지 ② 농협 등 금융기관 대출 ③ 정책자금 융자 조달 ④ 기타
14.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자금 규모는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1억원 ③ 1~2억원 ④ 2~3억원 ⑤ 3~5억원
 ⑥ 5억원 이상
15. 귀하께서는 창업 후의 정착기간을 최소한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
 ① 6개월~1년 ② 1~2년 ③ 2~3년 ④ 3~5년
16. 창업한 후 정착단계에서 귀하의 연간 소득목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 ① 1천만원 이하 ② 1~3천만원 ③ 3~5천만원 ④ 5~7천만원 ⑤ 7천만~1억원
- ⑥ 1억원 이상

17. 농산업을 창업하신다고 하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정착초기 생활비 부담 ②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조달 ③ 영농기술의 습득문제
- ④ 재배품목의 선택 ⑤ 마을주민과 원만한 관계유지 ⑥ 주거 등 농촌생활환경 적응
- ⑦ 도시문화 포기과 도시에서 형성된 이웃·친구·가족과의 인간관계 단절 ⑧ 농촌생활 적응이 잘 안되는 가족간의 갈등 소지

18. 귀하께서 창업을 할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정책자금의 지원(저리 융자금 등) ② 새로운 영농기술의 습득기회 제공 ③ 영농체험지도 및 상담
- ④ 주택이나 농지확보 알선 ⑤ 생산농산물의 판로지원 및 홍보

지원자격 등

19.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를 늘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 ① 크게 도움될 것 ② 다소 도움될 것 ③ 도움 안될 것 ④ 별로 의미가 없을 것

19-1. 농산업 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① 크게 도움 될 것 ② 다소 도움 될 것 ③ 도움 안될 것 ④ 별로 의미가 없을 것

19-2. 농산업 창업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실시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중도 또는 사업종료 후 포기 ②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③ 실제 영농활동 연관성
- ④ 미대상자들과의 위화감 ⑤ 대상자 관리 문제

20. 지원대상자를 청년으로 하면 연령제한은 몇 세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

21. 창업지원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수당 형태로 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1. 한정된 예산사정과 공평한 기회보장 등을 감안할 때 지원기간을 어떻게 정하

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4년 이내

21-2.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월 50만원 이내 ② 월 80만원 이내 ③ 월 100만원 ④ 월 120만원 이내

21-3. 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월별로 지급 ② 분기별로 지급 ③ 반기별로 지급 ④ 연별로 지급

22.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수급기간 만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② 수급기간의 2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③ 수급기간의 3배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23. 정부는 창업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명	알고있음	모름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농림축산식품부)	()	()
○ 귀농·귀촌교육 실시(시군농업기술센터, 정부지원 민간기관)	()	()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시군)	()	()
○ 귀농인의 집 조성(시군)	()	()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농촌진흥청)	()	()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시군, 농협)	()	()
○ 지자체의 귀농·취촌인 지원사업(시군)	()	()

“감사합니다.”

부록 2 :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제도 개요

(1)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농식품부·농정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요

- 장소 : 서울 양재역 4번출구 바로 앞(1899-9097, www.returnfarm.com)
- 역할: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종합상담·설계, 온오프라인 정보·교육 지원
- 조직(13명) : 소장1, 정규직4, 상담6(전문상담3·농어촌공사1·농협1·임업진흥원1), 교육2, 행정1

□ 귀농귀촌종합센터 주요 업무내용

- (기본정보 제공) 귀농창업·주택구입자금 등 정부지원정책, 교육, 임업,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
- (지역정보 제공) 지역지원정책, 품목, 임대농지, 빈집, 지역강좌 운영 등 지역별 맞춤형상담 및 정보제공(3개 시군/일), 지역강좌(주2회) 운영
- (전문가 1:1 상담) 농업마이스터, 귀농선배 등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상담·자문 서비스를 농촌 정착시까지 제공
- (교육운영) 귀농·귀촌 기본소양 및 마인드, 귀농사례, 정부정책 등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기본공통교육, 주문형교육) 및 소그룹강의
- (귀농귀촌 정책홍보) 귀농닥터지원, 국내 귀농귀촌박람회, 취창업박람회 등 출장상담 및 지원정책세미나, 귀농귀촌정책 등 홍보

□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실적

(단위: 명)

구분	'14.1분기	'14.2분기	'14.3분기	'14.4분기	'15.1분기	'15.2분기	'15.3분기	합계
전화상담	2,437	1,976	2,193	2,659	4,000	4,151	4,171	21,587
방문상담	120	270	311	460	412	409	494	2,476
출장상담	20	13	16	55	25	394	399	922
온라인상담	-	-	-	-	13	9	9	31
합계	2,577	2,259	2,520	3,174	4,450	4,963	5,073	25,016

주: * 전년 동기(3분기)대비 증가율(101.3%↑) : 전화 90.2%↑, 방문 58.8%↑, 출장 2,393.8%↑

(2) 귀농·귀촌 교육과정 운영(농정원)

- 교육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 운영현황: 교육 수요자의 귀농·귀촌 준비단계를 반영하여 매년 공개모집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귀촌 분야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운영
 - 특히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6차산업, 특정품목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제대군인 대상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교육 편성 및 운영(2기수, 80명)
 - * 퇴직예정경찰 대상 귀농·귀촌 기초과정 편성 및 운영(1기수, 20명)
 - *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1기수, 20명)

연도	기관수	과정수	교육인원(명)	사업예산	비 고
2009	28	36	3,227	1,291백만원	단기체험 중심
2010	18	23	1,134	1,134백만원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편성
2011	16	19	951	1,039백만원	
2012	20	22	962	1,137백만원	
2013	29	39	1,925	1,750백만원	평일/야간 교육
2014	36	44	2,450	2,341백만원	대도시 중심 교육
2015	37	42	2,785	2,929백만원	수준별·유형별 교육

* '09년 귀농귀촌 임시대책을 기점으로 귀농귀촌교육 공모과정 본격 편성 및 운영

* 귀농귀촌 온라인교육(73개과정) : ('11)15,133명 → ('12)29,916 → ('13)24,996

- 지원조건: 국비 70 ~ 80%, 자부담 20 ~ 30%
- 교육 실행기관: 총 37개기관 42개과정('15년)
 - 귀농분야(30개 과정) : 귀농기초 10/귀농중급 16/귀농심화 4
 - 귀촌분야(12개 과정) : 귀농생활 12

(3) 귀농·귀촌 교육(농촌진흥청)

- 교육목적: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영농정착기술교육과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창업 이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 교육내용
 - 영농정착기술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13~)('15년 4,520명, 11억원, 국비 50%)
 - (교육방법) 신규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강의, 간담회, 평가회 등 실시
 - * 연수작목별 교육기간 탄력적 운영(3~7개월, 연간 총 800시간 이내)
 - * 자가영농지 실습인정(월 20시간 이내), 주작목(벼)+부작목(채소) 연수 가능 등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13~)('15년 517명, 16억원, 국비 50%, 지자체 50%)
 - (교육방법) 선도농가가 귀농인(이주 5년이내)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 지원
 - * 선도농가 자격: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연수자에게 월 80만원 지급, 선도농가(멘토수당) 월 40만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16~)
 - (지원방법) 귀농·귀촌인 대상, 도원(기술센터)에서 추진
 - (예산지원) 국비 7.2억원(30%)·지방비(70%), 6개소(예정)
- 교육일정 및 관리
 - 사업담당자·귀농연수생·선도농가별 표준매뉴얼 제공(1종)
 - * 15개 품목(사과, 수박, 딸기, 블루베리, 한우 등)에 대한 교수학습체계 등
 - 사업담당자·귀농연수생·선도농가 대상 도별 순회교육(4~5월)
 - * 사업방향 공유, 사업담당자·귀농연수생·선도농가의 역할, 우수사례 발표·시상 등
 - 귀농연수생·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시스템 개발·관리(4~11월)
 - * 현장실습교육 정보의 데이터화, 결과분석 및 연수참여자간 맞춤형 피드백
 - 귀농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자율적 귀농창업역량 제고(설문조사, 연말)

(4) 2030세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취·창업교육 지원사업

- (교육목적) 귀농·귀촌 취·창업에 관심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귀촌 관심 및 실행 유도
- (교육내용) 귀농·귀촌 정책 소개 및 귀농선배 창업사례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산업 창업방법론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

구 분	2014년		2015년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기관명	한국농수산대학	카네기직업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직업전문학교
기 수	총 27(1기당 30명)	총 17(30명)	총 27(1기 35명 2기 25명)	총 27(1기 22명 2기 26명)
교육 일정	(1기) 9/16 ~ 10/14, (2기) 10/10 ~ 10/24	10/7 ~ 10/23	(1기) 9/2 ~ 11/4, (2기) 9/2 ~ 11/4	(1기) 8/21 ~ 9/19, (2기) 9/4 ~ 10/16
교육 시간	총 52h (이론 44h, 실습 8h)	총 80h (이론 40h, 실습 40h)	총 50h (이론 30h, 실습 20h)	총 50h (이론 30h, 실습 20h)

- 대학 정규교과 운영 : 각 1학기 과정으로 운영
 - * ('14) 4개 대학 109명, ('15.1학기) 3개 대학 81명, ('15.2학기) 7개 대학 235명 예정
 - '14년 2학기(4개 대학) : 서울시립대(20명), 상명대(39), 수원대(21), 공주대(29)
 - '15년 1학기(3개 대학) : 충남대(35), 전남대(20), 동국대(26)
 - '15년 2학기(7개 대학) : 서울시립대(30), 수원대(31), 건국대(29), 을지대(25), 서정대(22), 동국대(39), 공주대(59)
 - * 전문강사료, 창업계획서 작성 자료조사 등의 비용 일부 보조(대학별 12백만원)
- 창업계획서 공모전 : 수상작은 창업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시상(장관상 등)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게재 및 공유

귀농·귀촌 창업 교육비 지원

- 청년층의 귀농·귀촌 교육 참여시 교육비 자부담분의 50% 추가 경감

초기 정착 지원 대책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시 농신보 우대보증 적용
-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농지구입 자금도 저리(1%, 5ha 한도)로 지원
- 선도농가 실습지원 및 선배 귀농인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습득 지원

(5)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 목적

- 귀농·귀촌의 사회적 붐 유지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농촌의 신규인력 확보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귀농·귀촌 관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확한 정보, 상담·체험 기회 등 제공
 - 2011년부터 매년 1회씩 박람회 개최(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 * (제1회) '11년 11월 4~6일, (제2회) '12년 5월 4~6일, (제3회) '13년 10월 25~27일
 - (제4회) '14년 6월 20~22일

□ 2015년 귀농귀촌·일자리 박람회 개최 결과

- 기간 : '15. 6. 5.(금) ~ 6. 7.(일)
-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규모 : 정부,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기관 및 단체 등 참가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100%)
- 행사 내용 : 귀농선배와의 상담, 귀농·귀촌 유형별 소그룹 강의, 지자체별 부스 설치 및 상담·안내 등
- (개선) 귀농·귀촌 박람회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합 운영하여 농식품 신규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조기정착 지원 강화
 - 참여기관 : (기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 (개선) 농식품 관련 기업, 법인 등을 포함
 - 콘텐츠 : (기존) 방송 홍보, 농지, 금융, 기술상담 → (개선) 일자리, 창업컨설팅, 창업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등 초기 정착 지원 콘텐츠 강화

(6)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 (목적)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건립·운영
 - 센터 안의 귀농희망자와 일손 부족 농가를 연계하여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 유도
- (사업대상자) 시장·군수
- (지원자격) 귀농·귀촌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
- (지원조건) 개소당 8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2015년도부터 2년차사업으로 추진
 - 1년차 :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
 - 2년차 :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
 - 예산 : ('13) 80억원(제천·영주), ('14) 90억원(홍천·구례·금산), ('15) 40억원(고창, 영천)
 - * '13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금산군은 '14년 추가예산 20억원 확보(국비 10억원)
- (사업내용) : 주거공간 30세대,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 (센터운영 사례) : ('15.4) 금산, ('16p) 제천, 영주, 홍천, 구례, ('17p) 고창, 영천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인구 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개 시·군(신규12, 계속38)

* 강원: 화천·양양·홍천, 충북: 단양·보은·영동·충주·제천, 충남: 금산·서천·홍성·부여, 전북: 남원·진안·고창·완주·장수·순창·무주·임실·김제·정읍·부안, 전남: 곡성·순천·강진·영암·영광·장성·나주·구례·화순·해남·고흥·진도, 경북: 상주·봉화·영천·예천·울진·의성·문경·고령, 경남: 남해·하동·거창·창녕·의령·함양, 제주: 서귀포

- 지원규모 : 시·군당 3년에 걸쳐 총 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국고) : ('07) 10억원 → ('08) 20 → ('09) 20 → ('10) 15 → ('11) 23 → ('12) 26 → ('13) 35 → ('14) 40 → ('15) 50

□ 단계별 주요사업내용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출향인사 등 DB 구축 -상담 등 정보제공 -도시민 농촌 초청 ○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문화 체험/체득프로그램 -예비귀촌인 농사 체험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전원택지, 빈집, 농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실행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 -융자금 알선 -이사비 지원 ○ 빈집 수리비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착륙 프로그램 -인턴제, 멘토링제 운영 -영농 체험 교육 -귀농인 모입 지원 -집들이 비용 지원, 등

(8) 귀농인의 집

□ 현황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

*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자의 승낙 하에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고 일정기간(약5년) 후에 소유주에게 반환

- 2009년도에 100개소 지원

* 예산 : 30억원(국고 21억원 70%, 지방비 9억원 30%)

- (입주자 비용) 10만원~20만원/월, 1~2만원/일

※ (운용 시·군, '15.2월 현재) : 41개 시군, 141개소 * '15년 추진 70개소 제외

- 강원(1개 시군 1개소), 충북(4개 시군 8개소), 충남(4개 시군 13개소), 전북(9개 시군 40개소), 전남(11개 시군 35개소), 경북(5개 시군 13개소), 경남(7개 시군 31개소)

※ (수요조사, 2015.2월) 34개 시·군, 120개소 * 수요조사 이후 추가적 요청 시·군 제외

- 강원(2개 시군 2개소), 충북(2개 시군 7개소), 충남(4개 시군 7개소), 전북(9개 시군 48개소), 전남(6개 시군 23개소), 경북(4개 시군 11개소), 경남(5개 시군 9개소), 제주(2개 시군 13개소)

□ 향후 계획 : 3년 동안 총 300개소 건립 계획

- 2015년도에는 70개소 건립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소요예산 : 10.5억원(70개소×30백만원×지자체보조50%)

- 지원방식 :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건립방식을 다양화

- 시장·군수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보건소 등 시군 소유 건물 등 리모델링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 등

(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개요

-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
 - * 농협자금을 활용하고 정부에서 이차차이를 보조하는 이차보전사업
- 2015년도 지원규모 : 1000억원('14년도 : 700억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신축)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조건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지원한도 : (창업) 3억원('14년도 : 2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대출금리 : (창업) 2%('14년도 : 3%), (주택구입·신축) 2.7%(65세 이상은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자격(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이주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고자 하려는 자
 - 거주기간 :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신청절차 : 신청(시·군-서류심사, 농협-금융상담) →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선정자) → 사업실적 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10)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014년도)

□ 제도 개선 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기준조건 완화(4.23, 지침개정)
 - * (설치규모) 2,000㎡ 이상 → 661㎡, (농지임차기간) 10년 이상 → 5년
- 농산업인턴 신청자격(39세이하 → 49) 확대(9.22, 지침개정)
 - ※ 201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농산업인턴제사업 자체를 폐지
-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방법 다양화(10.1, 지침개정)
 - * 농촌 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 실적 50시간까지 교육시간에 포함
- 농촌주택 포함 2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감면(기재부)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금융위)
 - * 안덕수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회 의결(12.29) 및 공포 (2015.1.20)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소규모 신규주택단지 기반조성 지원(농식품부)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10월)
 - * 신규마을 조성 지원기준 완화 : 10호 → 5~6호
-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조건(이자율 3%→2%) 완화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도 제고(국토부)
 - * 현행법에 맞게 도면 수정 완료, 시스템 개발 완료, 현재 시스템 등록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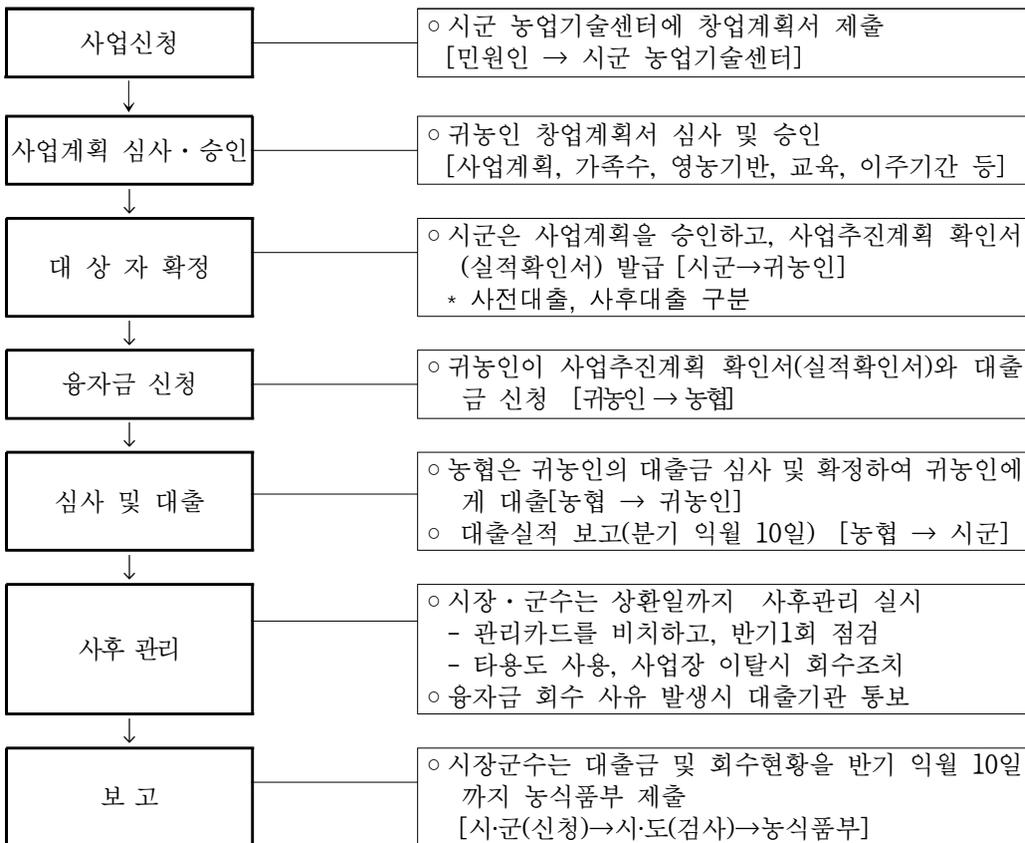
(11)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09 ~ 2014년
- 지원조건: 이자율('09~'14: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내용(억원) * 건수는 대출건수임(사람숫자가 아님)

구분	인원	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 용자액
창업자금	3,241	280,500	86.5
주택자금	1,264	46,845	37.1
합 계	4,505	327,345	72.7

□ 사업추진절차



[12]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추진

□ 사업 개요

- (목적) 예비 농업인이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영농창업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건립·운영
 - 귀농인이 가족과 1년간 임시거주하면서 농업교육 및 실습(체류비 1만원/평)
- (예산) 개소당 80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 '15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1년차 or 2년차) 40억원(국고 20, 지방비 20)
- (주요시설) 주거공간 30세대,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실습농장, 시설 하우스, 퇴비장, 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상담), 쉼터 등

□ 추진 경과

- 금산 완공('15.3월), 나머지 6개는(제천, 영주, 홍천, 구례, 영천, 고창) 건립 중
 - * 사업부진 국회 예정처 지적('14.9)으로 2년차 사업으로 방식변경
- 지역별 추진 현황('15.10월 현재)

지구 (지역)	예산 (억)	사전준비 일자				착공 일자	진도 (%)	추진 상황	준공 예정
		토지 확보	지방비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제천	80	'13.4	'13.4	'14.2	'14.6	'14.7	80	건축공사 진행중	'15.11
영주	80	'13.7	'13.12	'14.4	'14.12	'15.1	60	건축공사 진행중	'15.12
홍천	80	'14.4	'14.4	'14.11	15.3	15.8	20	건축공사 진행중	'16.6
구례	80	'14.11	'14.9	'14.11	'15.3	'15.7	30	건축공사 진행중	'16.6
영천	80	'14.12	'15.5	'15.12	'16.3	'16.5	-	기본계획 수립중	'16.12
고창	80	'14.12	'15.3	'15.12	'16.5	'16.7	-	기본계획 수립중	'16.12
금산	60	'12.12	'14.11	'13.12	'14.11	'15.2	100	입주완료	'15.3 '15.9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및 지방비 확보 추진, 기본·실시설계 통합실시 등 추진일정 재조정, 지자체 독려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함.

(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 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 국회 본회의 통과(2014.12.29) 및 공포(2015.1.20)
 - 2015년 상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7월 21일 시행

□ 법률 주요내용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 규정
 - 귀농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귀촌 : 비농업인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함.
 - * 초·중·고 학생, 병역의무 수행 중인자,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일시적 이주자, 귀농인은 제외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
 -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시·군·구 계획 수립
-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이주자 우대지원
-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원사업, 농업기술, 농촌생활정보 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 지원
 -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시책 추진, 박람회개최, 교육지원, 일자리알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비용, 농지·축사·양식장·어선·어구 또는 어장 매입·임차 비용, 농기계임대·은행사업 지원, 유휴농지·유휴시설 중개알선 등

(14) 귀농·귀촌 예산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억원)		40.4	185	197	209	239.7
(농진청)		(8.4)	(16.8)	(16.8)	(15.5)	(15.5)
농업 이차 보전 사업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예산 11.4억원	예산 33.7억원	예산 38.7억원	예산 64.8억원	예산 74.0억원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실시기관: 농협)	(융자규모) 500억원	(융자규모) 600억원	(융자규모) 700억원	(융자규모) 1,000억원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 한도액(창업, 주택)	(2억, 4천만)	(2억, 4천만)	(2억, 5천만)	(3억, 5천만)	(3억, 5천만)
	대출 금리(창업, 주택)	(3%, 3%)	(3%, 3%)	(3%, 2.7%)	(2%, 2.7%)	(2%, 2.7%)
소 계(억) (농진청)		40.4 (8.4)	152(15,19 0) (16.8)	159(15,94 0) (16.8)	144.7(14, 469) (15.5)	165.7(16, 569) (15.5)
귀농 귀촌 활성 화 지원 사업	○ 귀농·귀촌 교육(농정원)					
	-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11.4억원	21.1억원	24.5억원	29.3억원	29.3억원
	- 3주~3개월 과정	- 962명	1,925명	2,450명	(P)2,800	(P)2,800
	- 교육비 70~80% 국고지원					
	○ 귀농인 실태조사	-	-	-	-	1억원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26억원	35.8억원	40.9억원	50.9억원	50.9억원
	- 시군/ 3년간 6억원 (국고 50%, 지자체 50%)	27개 시군	35개	40개	50개	50개
	○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농정원)	3억원	5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0억원	80억원	40억원	60억원
	- 국고 50%, 지자체 50%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고창, 영천	고창, 영천
- '15년부터 2년차 사업			10억(금산)			
- 귀농인농업창업보육센터						
○ 귀농귀촌종합센터(농정원)				10억원	10억원	
- 1:1상담, 빈집·지역정보, -아카데미·소그룹 강의		-	-			
○ 귀농인의 집(지자체)				10.5억원	10.5억원	
- 70개소×30백만원×50%		-	-	(70개소)	(70개소)	
○ 선도농가실습지원(농진청)	8.4억원	16.8억원	16.8억원	15.5억원	15.5억원	
- 200명	200명	560명	560명	517명	517명	
- 120만×5개월×50%	월보수1/2 限60만,10월	농가40만 귀농인80만	농가40만 귀농인80만	농가40만 귀농인80만	농가40만 귀농인80만	

(15)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현황

단계	구분	주요 내용	2015년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통교육 등 제공	10억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 귀농귀촌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4억원
	귀농귀촌 교육	○ 현장 실습 위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	29억원 (2,800명)
실행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국고 50%, 지자체 50)	51억원 (50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15~'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10.5억원 (70개소)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사업 선정 : ('13) 제천·영주, ('14) 홍천·구례, 금산, ('15) 고창·영천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 운영 : ('15) 금산, ('16) 제천·영주·홍천·구례, ('17) 고창·영천	40억원 (2개소) (2년차 사업)
정착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2%, 주택구입 2.7%(65세 이상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1000억 원 규모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50%, 지자체 50%	15억원 (517명)

(16)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단계	구분	주요 내용	2015년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통교육 등 제공	10억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귀농귀촌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4억원
	귀농귀촌 교육	○현장 실습 위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	29억원 (2,800명)
실행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국고 50%, 지자체 50)	51억원 (50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15~' 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10.5억원 (70개소)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사업 선정: ('13) 제천·영주, ('14) 홍천·구례, 금산, ('15) 고창·영천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 운영: ('15) 금산, ('16) 제천·영주·홍천·구례, ('17) 고창·영천	40억원 (2개소)
정착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2%, 주택구입 2.7%(65세이상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금융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정안 시행('15.7.21)	1000억원 규모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50%, 지자체 50%	15억원 (517명)
	농업보조 자격조건 완화	○소규모 비닐하우스 기준조건 완화('14.4, 지침개정) *(설치규모) 2,000㎡ 이상 → 661㎡, (농지입차기간) 10년이상 → 5년 ○귀농인 쌀 직불금 수급대상 조건 완화('15.2월 시행) *(당초) 등록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농지 1만㎡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 (변경) 등록직전 3년 중 1년 이상을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6년 예정 사업	○대학생 1,000㎡이하 농지소유 허용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79억원) ○귀농인·창업농 등 소규모 맞춤형 농지(90억원) *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 1,000㎡ 이하 단위 임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진청) * (지원방법) 귀농·귀촌인 대상, 도원(기술센터)에서 추진 * (예산지원) 국비 7.2억원(30%)·지방비(70%), 6개소(예정)	

참 고 문 헌

- 강대구 외,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2002.
- 김경덕 외, 『농업생산·경영구모의 변화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김정호 외,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김정호, 『가족농 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마상진 외, 『취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2015.
- 마상진 외,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황수철 외,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발전방안』, 농정연구센터, 2014.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법률(내부자료)』, 20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
- 농촌진흥청, 『외국의 취농·귀촌 동향과 정책』, 2015.
- 삼선복지재단 외,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201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2014.

R30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인 쇄 2015. 12. 27

발 행 2015. 12. 29

발행인 강 정 일

발행처 (사)환경농업연구원

137-8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길 6

제중빌딩 302호

02-3472-8830~1 <http://www.sari.re.kr>

인 쇄 유하인쇄 (02-533-748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사)환경농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